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hkoo@kiep.go.kr, 044-414-1271)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044-414-1156)
김종덕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jongduk.kim@kiep.go.kr, 044-414-1181)
김현수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044-414-1087)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gskang@kiep.go.kr, 044-414-1099)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skang@kiep.go.kr, 044-414-1058)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hkim@kiep.go.kr, 044-414-1135)
금혜윤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위원 (hykeum@kiep.go.kr, 044-414-1205)
엄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전문연구위원 (jheom@kiep.go.kr, 044-414-1149)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위원 (mjkgang@kiep.go.kr, 044-414-1196)

차 례

1. 머리말
2. 한미 FTA의 의의와 경과
3. 한미 FTA 이후 주요 경제 및 제도적 변화
4. 맺음말

주요 내용

-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음.
 -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둠.
-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발전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고기술 중간재 무역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미국으로부터 사업서비스 수입이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양국간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가 고도화됨.
 -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각국의 수출에서 상대국 내 생산된 부가가치를 사용하는 비중이 FTA 발효 이전(2011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상승함(2019년 기준).
 -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한미 FTA 이후(2012~19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
 - 한미 FTA라는 토대 위에서 지난 10년간(2011~20년) 한국과 미국은 각각 2.4%와 1.7%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OECD 국가 중 각각 3위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임.

////// 주요 내용(계속)

- ▶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었던 분야에서는 보완대책 수립과 함께 해당 분야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당초 예상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남.
 - 소고기 시장 개방, 의약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수입차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완화 등은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후생에 대한 위협,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했던 주요 쟁점사항이었음.
 - 각 쟁점별로 여러 안전장치와 보완대책이 도입되고 해당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합되면서 우려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관련 국내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짐.

- ▶ 다만 한미 FTA로 인한 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피해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 개방의 이익을 보다 폭넓은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한미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확대된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근로자의 경우 더 큰 이윤 혹은 소득 증가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의 경우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오히려 수입경쟁이 더 심화된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을 확률이 높음.
 - 비수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고령일 경우 시장 개방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장치 및 지원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 한미 FTA를 통해 진전된 양국간의 경제 및 제도적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미래 협력 의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국간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 세계 최대 선진 경제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는 오는 2022년 3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이하게 됨.
 - 2000년대 초반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약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질서가 지역무역협정 중심으로 변화한 가운데 한국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함.
 - 2004년 5월 한국정부는 개정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함. 거대선진경제권인 미국과 EU를 FTA 교섭의 우선순위로 정하면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공표함.
 -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14개월간 여덟 차례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2007년 4월 최종타결하였으며, 2011년 한 차례의 추가 협상 후 2012년 3월 15일부로 발효됨.

- 한미 FTA 추진은 세계 최대 수요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취약 분야의 관세 감축으로 인한 산업 간 불균형 △광범위한 통상 관련 규범 및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예측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음.
 - 수출 주도형 성장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생산 및 생산성 증대 △선진 시장 내 경쟁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편입 △개방을 통한 서비스 분야 활성화 등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음.
 - 동시에 한미 FTA를 통해 WTO 체제하에 남아 있던 관세를 극히 일부의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 철폐 하면서 농축산 분야 등 비교열위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간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은 서비스 및 투자 개방 확대에 따른 해외 거대자본의 국내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과 해외 자본에 대한 경제적 예측화 우려도 공존하였음.

-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10년간 주요 경제적·제도적 변화를 돌아보고 성과와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함.
 - 한미 FTA 발효 10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미 FTA 이후의 다양한 경제적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과 ‘무역-투자-서비스-IP 연계’¹⁾라는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함. 아울러 한미 FTA 체결과 함께 통상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제도적 변화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먼저 2장에서 한미 FTA의 의의와 협상 진행 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3장 가절에서 한미 FTA 이후 나타난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관계의 변화를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수출 부가가치, 혁신(특허) 차원에서 논의함. 마지막으로 3장 나절에서 한미 FTA와 함께 큰 관심을 받았던 소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 자동차, 투자자-국가 간 분쟁 등과 관련된 논의들과 기타 국내 제도적 변화를 살펴봄.

1) Baldwin(2016)은 21세기 무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에 따라 상품무역과 투자, 서비스, 그리고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간의 더 긴밀한 연계(trade-investment-services-IP nexus)를 통해 작동된다는 개념을 제시

2. 한미 FTA의 의의와 경과

가. 한미 FTA 체결의 의의

- 한미 FTA는 한국이 2003년 8월 마련한 ‘FTA 추진 로드맵’에서 주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중장기적 과제로 상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무역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음.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WTO 가입 이후 처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첫 FTA로,²⁾ 미국은 한미 FTA 체결 당시인 2012년 기준 세계경제의 약 21.5%(GDP 기준, World Bank)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었으며, 당시 이미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 중 약 10.7%에 해당하는 수요가 미국으로부터 발생하였고 향후 성장 가능성 역시 큰 시장으로 판단되었음.
- 한국은 2012년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말 기준 14.9%까지 상승하였으며, 수입도 같은 기간 8.3%에서 11.9%로 증가하였음.
-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의 의의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안정적 확보, 생산·고용·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경제 사회 시스템 선진화 계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외국인투자 증대 등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음.³⁾
- 한미 FTA는 양국간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확대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통상협정 차원에서도 체결 당시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FTA로서 이후 FTA 협상에서 하나의 기본 틀로 기능해옴.
- 한미 FTA 협정은 우리나라가 이전에 체결한 FTA에 비해 더 많은 구성요소를 담았으며, 특히 법적 구속력을 명시한 조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하였음(글상자 1 참고).
- 주요 구성요소 중 한미 FTA 이후 다른 협정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도 존재하는데 환경, 노동 시장, 소비자 보호, 혁신, 공공정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보조나 SPS 관련 내용은 이후의 다른 협정에서도 한미 FTA에 준하는 의무사항의 변화가 나타남.
- 또한 협정 전체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미 FTA와 다른 협정 간 유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한미 FTA 이후 선진국과 맺은 협정을 중심으로 협정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한미 FTA 이전 개발도상국과 맺은 협정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아울러 CPTPP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TPP 협정문이 2015년에 공개되었을 때, TPP 협정의 규범 수준을 우리나라의 FTA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가 기준으로 사용되었음.⁴⁾

2) 협정의 발효는 한-EU FTA가 한 해 먼저인 2011년에 이루어짐.

3)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us/info/1/>) 참고

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5. 11. 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 정부 「협정문 분석 T/F」에서 정밀 검토 착수,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57706(검색일: 2022. 2. 10).

글상자 1. 통상협정 구성요소와 한미 FTA 협정

- 세계은행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FTA의 협정 내용을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각 협정문 내 포함 여부(coverage) 및 분쟁절차와 같은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지역무역협정의 질적인 측면의 개방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적으로 FTA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협정의 내용에 관세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경쟁정책 등을 비롯한 많은 규제적 조치와 다양한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됨.
 - 지역무역협정의 질적 측면에 대한 정량화를 위하여 세계은행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FTA의 협정 내용을 52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각 협정문에서의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FTA의 실질적 자유화 수준(depth)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52개 구성요소는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분야(WTO_Plus)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분야(WTO_X)로 구성됨.
- 세계은행 FTA 협정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구성요소를 비교하였을 때, 한미 FTA의 협정 수준은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후 맺은 협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협정은 이전 FTA에 비해 WTO 협정 기준 더 많은 구성요소를 담았으며, 특히 법적구속력을 명시한 조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한미 FTA와 다른 협정 간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한미 FTA 이후 선진국과 맺은 협정을 중심으로 높은 상관관계(한-캐나다: 0.80, 한-호주: 0.77, 한-뉴질랜드: 0.77)를 나타내는 반면, 한미 FTA 이전 또는 개발도상국과 맺은 협정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음(한-ASEAN: 0.37, 한-인도: 0.59, 한-베트남: 0.55).
 - 한-페루 FTA 및 한-베트남 FTA의 경우 구성요소의 항목 수와 법적구속력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이들 협정은 다른 협정과의 유사성(상관관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과의 협정'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규정과 의무조항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미 FTA는 구성요소의 수와 법적구속력 조항이 많은 동시에 이후에 나타난 협정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 이후 통상협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FTA | 발효 연도 | (1) WTO_plus | (2) WTO_X | (3) WTO_Plus (법적구속력 조항) | (4) WTO_X (법적구속력 조항) | (3)+(4) | 한미 FTA 유사도 |
|--------------|-------------|--------------|-----------|-------------------------|----------------------|-----------|------------|
| 구성요소 최대점수 | | 14 | 38 | 28 | 76 | 104 | 한미 FTA=1 |
| 1. 칠레 | 2004 | 14 | 7 | 24 | 11 | 35 | 0.747 |
| 2. EFTA | 2006 | 13 | 4 | 26 | 8 | 34 | 0.717 |
| 3. 싱가포르 | 2006 | 12 | 9 | 24 | 7 | 31 | 0.641 |
| 4. ASEAN | 2007 | 12 | 11 | 22 | 14 | 36 | 0.366 |
| 5. 인도 | 2010 | 14 | 11 | 26 | 6 | 32 | 0.587 |
| 6. EU | 2011 | 13 | 9 | 23 | 11 | 34 | 0.733 |
| 7. 페루 | 2011 | 13 | 18 | 25 | 20 | 45 | 0.646 |
| 8. 미국 | 2012 | 13 | 13 | 23 | 14 | 37 | 1 |
| 9. 터키 | 2013 | 12 | 5 | 17 | 5 | 22 | 0.619 |
| 10. 호주 | 2014 | 13 | 19 | 23 | 12 | 35 | 0.773 |
| 11. 캐나다 | 2015 | 13 | 16 | 23 | 12 | 35 | 0.802 |
| 12. 중국 | 2015 | 13 | 15 | 20 | 9 | 29 | 0.773 |
| 13. 뉴질랜드 | 2015 | 13 | 19 | 23 | 12 | 35 | 0.732 |
| 14. 베트남 | 2015 | 13 | 19 | 26 | 18 | 44 | 0.554 |
| 15. 콜롬비아 | 2016 | 14 | 20 | 26 | 9 | 35 | 0.726 |

주: 1) WTO_X는 WTO 협정에 구성되지 않은 요소, WTO_Plus는 기존 협정에 존재하나 추가적인 내용이 부가된 구성요소를 의미.
 2)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점수는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0점,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1점, 법적구속력이 있는 경우 2점 부여.
 자료: World Bank DB(2017), 재인용: 조문희 외(2017),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검색일: 2022. 1. 30).

나. 한미 FTA 체결 진행 경과 및 현황

- 한미 양국은 2006년 2월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다수의 협상 끝에 2007년 4월 한미 FTA의 주요 내용을 타결하였으며, 이후 한 차례 추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를 발효하였음. 이후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반영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부터 발효된 상태임.
- WTO 출범 이전에 드물게 체결되던 지역무역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이후 매년 20개 정도씩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대경제권을 지향하는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하였음.⁵⁾
- 동시에 미국은 아시아 내 미국의 경쟁력과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으며, 미국과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한미 FTA를 통상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서 2004년 5월 USTR 부대표가 한미 FTA 체결에 관심을 표명함.

표 1. 한미 FTA 일지

| 일시 | 일정 | 비고 |
|------------|-----------------------------------|---|
| 2019.01.01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 3차에 걸친 개정 협상 개최(2018.1~3) |
| 2017.08.22 |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 미국 USTR,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따름(2017.7.13, 서울). |
| 2012.03.15 | 발효 | |
| 2011.11.22 |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한미 FTA 비준안을 포함한 14개 이행법안 등 모든 법안 표결 종료(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 참석,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
| 2011.02.10 | 추가 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 |
| 2010.12.03 | 추가 협상 타결 | 통상장관회의 개최(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 |
| 2007.06.30 | 서명 | 워싱턴 D.C. |
| 2007.04.02 | 협상 타결 | 통상장관회의 개최(서울) |
| 2006.02.03 | 한미 FTA 추진 발표 |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 2005.09 |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
| 2004.11 |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 APEC, 칠레 |
| 2004.08 | USTR 부대표 한미 FTA에 대한 관심 표명 | |
| 2003.08 | 정부 'FTA 추진 로드맵' 마련 | |

자료: 한미 FTA 홈페이지(<https://www.fta.go.kr/us/info/2/>) 참고.

-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14개월간 여덟 차례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2007년 4월 최종타결하였으며, 한 차례의 추가 협상 후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2년 3월 15일부로 발효됨.
-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공식화되었으며, 2018년 세 차례 개정 협상 후 2019년 1월 개정의정서가 발효됨.

5) 유명희(2005),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선진형 통상국가 실현」, 『나라경제』(4월),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4879>(검색일: 2022. 2. 10).

다.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

- 한미 FTA 협정은 수준 높은 상품시장 개방을 기본으로 서비스 시장 및 투자 개방, 무역구제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WTO 규범에서 다루지 못한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 신규 무역규범과 관련된 내용 또한 높은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상품시장 개방]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전체 수입의 99.8% 및 99.1% 수준에 이르는 상품에 대한 대미국 관세를 최종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품목 수 및 금액 기준 모두 100% 상품에 대한 대한민국 관세를 최종 철폐하기로 약속함.

표 2. 양국 상품 양허결과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우리나라 전체 품목 | | | | 미국 전체 품목 | | | |
|----------|------------|-------|------------|-------|----------|-------|------------|--------|
| | 품목 수 | 비중 | 수입액(백만 달러) | 비중 | 품목 수 | 비중 | 수입액(백만 달러) | 비중 |
| 10년 이내 | 11,068 | 98.3% | 27,344 | 97.4% | 10,423 | 99.2% | 40,885 | 100.0% |
| 10년 초과 | 161 | 1.4% | 477 | 1.7% | 82 | 0.8% | 2 | 0.0% |
| 계절/현행 관세 | 16 | 0.1% | 213 | 0.8% | - | - | - | - |
| 제외 | 16 | 0.1% | 26 | 0.1% | - | - | - | - |
| 합계 | 11,261 | 100% | 28,060 | 100% | 10,050 | 100% | 40,887 | 100% |

주: 2003~05년 3개년 평균 기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2), 「한미 FTA 주요 내용」, pp. 16~17.

- 발효 10년 차인 올해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8.3%, 미국은 99.2%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완료됨.
-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최종적으로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합의함.
- 다만 양국 모두 분야별·품목별로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관세율 할당(TRQ) 설정 등 유연한 관세 감축 어젠다를 설정하여 개방함.
-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방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여 양허제외, 계절/현행 관세 유지 등 추가적인 유연성을 확보
 - 농업의 경우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를 제외하였고,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의 관세는 유지하는 대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
 -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나⁶⁾ 긴급 수입제한조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수산물의 경우도 우리 측의 민감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 철폐, 관세율 할당 (TRQ) 등을 도입하였음.
- [서비스시장 개방]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WTO의 열거주의 방식(positive list approach)과 달리 포괄주의 방식(negative list approach)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현지 주재의무 부과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됨(단, 도박·금융·항공운송·정 부조달 등 일부 제외).

6) 단 돼지고기 가운데 '냉동 기타(목살, 갈빗살 등)' 품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 철폐.

- 네 가지 일반적인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공간을 유지하는 유보목록을 두었는데, 한국은 91개(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이며, 미국 측 유보목록 개수는 총 18개(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임.
- 서비스 세부 분야별로 △법률 서비스는 3단계,⁸⁾ 회계·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추진을 약속하였고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사업자의 인허가 제도,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 방송쿼터 등은 현행 규제 수준 유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PP)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50%에서 100%까지 확대(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제외), PP에 적용되는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하였으나,⁹⁾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하였고 △육상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에 대한 규제권한도 포괄적으로 유보하였으며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와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금융 부수 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함.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도록 규정함.
- 다만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협정상의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유보함.

■ [투자 개방] 한미 FTA에서는 투자 분야 역시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포괄주의 자유화 방식을 취하며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최소기준대우, 수용 및 보상(간접수용 포함), 송금 보장,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 제한 금지 요건 등을 규정함.

- 보건·환경·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 조치는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이지 않으면 간접수용¹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
-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통상협정상 최초로 도입함.

■ [무역구제] 전반적인 상품분야의 자유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국간 무역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에 대비하여 무역구제 조치를 보완하는 장치와 함께 무역구제가 불합리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양국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함.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가격 약속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고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가격 또는 물량 합의'¹¹⁾ 제도를 도입함.

7)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현행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화 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 적용됨.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임.

8) 1단계 개방: 협정 발효 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2단계 개방: 협정 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 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9) 애니메이션 분야 (발효 전)35%-(발효 후) 30%.
영화 분야(발효 전)25%-(발효 후) 20%.

10) 간접수용이란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 박탈 또는 국유화하는 것(직접수용)은 아니나, 정부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박탈되는 것임.

11)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수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조사 당국이 수락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는 것을 의미함.

- 양국은 긴급 수입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함.
-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 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를 합의하여 양국간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 [WTO+ 규범] WTO를 비롯한 기존의 통상협정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거나 규정이 미비하였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정부조달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전자상거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규정, 전자인증 및 전자 서명 규정 포함
- [지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발행 후 50년에서 70년),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 등 금지, 냄새·소리 상표 등록 가능,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 폐지, 불합리한 특허 등록 지연으로 인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자료 독점, 허가·특허연계 규정 등 도입
- [노동/환경]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관련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7개 다자환경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 및 이행하도록 규정
- [정부조달] 상품·서비스 조달 양허하한선을 미국은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우리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춤.

■ [최근 한미 FTA 개정의 주요 내용] 미국 대선 경선과정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민국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2017년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미국 측 관심 개정사항과 함께 우리 측의 관심 개정사항도 반영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에 최종 발효되었음.

-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화물자동차 관세혜택을 유예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을 완화하였음.
 - [화물자동차] 대한민국 수입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 차 철폐('21.1.1 철폐)에서 추가로 20년('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 [자동차 안전기준] 연간 제작사별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만 5,000대),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등
 - [자동차 환경기준]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25)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¹²⁾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¹³⁾ 인정 상한 확대(현행 14.0g/km에서 17.9g/km) 등
- 한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ISDS 개선,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섬유 제품의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12) 1만 대 이하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 다소 완화된 평균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13)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추가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제도.

- [ISDS] ISDS 남소 제한,¹⁴⁾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¹⁵⁾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 [무역구제] 현지 실사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를 계산방식 공개 합의
- [섬유 원산지] 일부 공급부족 품목에 대해 역외산 섬유·원사(yarn)를 사용하더라도 예외 인정

3. 한미 FTA 이후 주요 경제 및 제도적 변화

가. 경제적 변화¹⁶⁾

1) 상품 무역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무역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과 대비되는 결과임.

그림 1. 한국의 대미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 | 2004~11년 연평균 증감률(%) | 2011~19년 연평균 증감률(%) |
|----|-----|---------------------|---------------------|
| 수출 | 대미 | 3.9 | 3.4 |
| | 대세계 | 11.8 | -0.3 |
| 수입 | 대미 | 6.5 | 4.2 |
| | 대세계 | 12.9 | -0.5 |

주: 그림의 좌축은 수출입, 우축은 수지.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2. 1. 20).

- 14) ①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 불가 ②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명확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 추가 ③ 다른 투자협정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④ ISDS 청구 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화 ⑤ '설립 전 투자'를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 확대 해석 방지.
- 15) 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관련, '동종상황' 판단에 있어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 ②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화.
- 16) 주요 분석대상 기간은 2004~19년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권 아래에 있는 2020년 이후 기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2011~19년 기간에 대미 수출은 연평균 3.4% 증가하여 2019년 736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대미 수입은 연평균 4.2%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621억 달러를 기록함.
-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수출 및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0.3%, -0.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¹⁷⁾
- FTA 발효 초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대미 수입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흑자 규모는 줄어드는 상황임.

■ [산업별 수출] FTA 발효 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산업은 수송기기이며, 화학고무플라스틱 및 기계 산업 또한 주요 대미 수출 산업으로서 증가세가 두드러짐.

표 3. 한국의 대미 산업별 수출 현황

(단위: %)

| 산업 | 2004~11년 연평균 증감률 | | 2011년 비중 | | 2011-19년 연평균 증감률 | | 2019년 비중 | |
|----------|------------------|------|----------|------|------------------|------|----------|------|
|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 농업 | 6.4 | 11.1 | 0.9 | 1.2 | 8.2 | 2.8 | 1.4 | 1.6 |
| 광업 | 7.4 | 22.9 | 0.0 | 0.1 | 19.9 | 3.7 | 0.0 | 0.1 |
| 섬유의류 | -6.5 | 1.7 | 4.6 | 4.7 | 3.0 | -1.0 | 4.5 | 4.4 |
| 화학고무플라스틱 | 13.3 | 18.4 | 14.5 | 23.0 | 6.8 | 0.6 | 18.8 | 24.6 |
| 철강비철금속 | 11.5 | 14.5 | 8.5 | 10.6 | 0.8 | -1.9 | 6.9 | 9.3 |
| 수송기기 | 3.9 | 14.6 | 28.0 | 22.7 | 5.1 | -4.3 | 32.0 | 16.4 |
| 전기전자 | -2.0 | 2.3 | 24.9 | 17.8 | -2.0 | 4.0 | 16.2 | 24.9 |
| 기계 | 12.3 | 19.0 | 18.7 | 19.8 | 4.5 | -1.0 | 20.3 | 18.7 |

주: 비중은 해당 연도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과 대세계 수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2. 1. 20).

- 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송기기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5.1%씩 증가하여 2019년 전체 대미 수출의 32%를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이 하락함에도 대미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 특징적임.
- 화학고무플라스틱(현상기록용 매체, 면역물품, 플라스틱제 판 등) 및 기계(트랙터, 배전반, 축전지 등) 산업의 대미 수출 역시 FTA 발효 후 대세계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내외로 확대됨.
- 반면 FTA 발효 기간에 무선전화기와 디지털 전자집적회로의 수출이 다소 둔화되며 전기전자의 수출비중은 감소함.¹⁸⁾

17) 아울러 한미 FTA 발효 이전 기간에 대세계 수출입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에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상품 무역 확대가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18) 2012~19년에 무선전화기와 디지털 전자집적회로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7%와 -2.1%로 전체 대미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임.

■ [산업별 수입]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수입 확대를 견인한 산업은 원유를 포함한 광업이며, 화학고무플라ستيك, 기계, 농업도 주요 대미 수입 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빠른 수입 증가율을 보임.

- 미국의 원유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여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LPG, 천연가스 등의 대미 수입도 함께 증가하면서 광업이 대미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6%에서 2019년 20%로 크게 늘어남.
- 그 외 대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화학고무플라ستيك(프로판,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 경질석유 및 조제품), 기계(기타 의료·미용·광학 기기, 메탄올), 농업(대두, 사료용 조제품) 등이며, FTA 발효 후 이들 산업의 대미 수입 연평균 증가율 또한 대세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표 4. 한국의 대미 산업별 수입 현황

(단위: %)

| 산업 | 2004~11년 연평균 증감률 | | 2011년 비중 | | 2011~19년 연평균 증감률 | | 2019년 비중 | |
|------------|---------------------|------|----------|------|---------------------|------|----------|------|
|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 농업 | 12.7 | 12.1 | 16.8 | 5.3 | 2.0 | 2.1 | 14.2 | 6.5 |
| 광업 | 26.3 | 20.3 | 4.6 | 31.7 | 25.0 | -3.9 | 20.0 | 24.1 |
| 섬유의류 | 5.6 | 10.2 | 5.5 | 6.5 | -2.4 | 3.1 | 3.3 | 8.6 |
| 화학고무플라ستيك | 7.1 | 14.5 | 18.2 | 16.5 | 5.9 | -0.8 | 20.8 | 16.2 |
| 철강비철금속 | 10.1 | 10.7 | 9.4 | 11.4 | -4.7 | -4.2 | 4.6 | 8.5 |
| 수송기기 | 13.5 | 15.6 | 8.7 | 3.6 | 4.8 | 3.4 | 9.1 | 4.9 |
| 전기전자 | -5.0 | 5.3 | 11.5 | 10.2 | -1.4 | 5.0 | 7.4 | 15.8 |
| 기계 | 6.3 | 9.1 | 25.2 | 14.9 | 1.6 | 0.1 | 20.6 | 15.6 |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2. 1. 20).

■ [용도별 수출] 무역 품목의 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중간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¹⁹⁾

- FTA 발효 기간에 수출 호조를 보인 화학고무플라ستيك(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 플라스틱제의 판) 및 기계(배전반, 축전지) 산업은 물론 전기전자(컴퓨터 부품, 디지털 전자집적회로)의 핵심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대미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8.6%에서 2019년 53.0%로 증가함.
- FTA 발효 후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자동차 수출이 크게 반등하고 현상기록용 매체, 기초메이크업 화장품, 조제식료품의 수출도 증가하면서 소비재의 수출 비중도 2011년 21.8%에서 2019년 30.3%로 크게 증가함.

19) 품목의 용도는 UN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활용하여 원자재,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 분류하며, 미분류 품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표 5. 한국의 대미 용도별 수출 현황

(단위: %)

| 용도 | 2004~11년 연평균 증감률 | | 2011년 비중 | | 2011-19년 연평균 증감률 | | 2019년 비중 | |
|-----|---------------------|------|----------|------|---------------------|------|----------|------|
|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 원자재 | 13.0 | 16.8 | 0.2 | 0.5 | -2.8 | -2.0 | 0.1 | 0.4 |
| 자본재 | 4.4 | 12.3 | 29.3 | 27.0 | -3.8 | -6.5 | 16.5 | 16.2 |
| 중간재 | 8.8 | 13.4 | 48.6 | 61.0 | 4.5 | 1.4 | 53.0 | 69.8 |
| 소비재 | -3.2 | 4.8 | 21.8 | 11.4 | 7.7 | 1.8 | 30.3 | 13.5 |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2. 1. 20).

- [용도별 수입] 용도별 대미 수입의 경우 한미 FTA 이후 중간재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원자재의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남.
- 수입이 크게 증가한 중간재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프로판, 경질석유 및 조제품, 스티렌, 메탄올 등), 전기전자 산업의 디지털 전자집적회로는 최대 수입 중간재이나 그 수입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화학고무플라스틱 및 기계 산업의 주요 중간재 품목(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 배전반 등)은 FTA 이후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미 수입도 함께 확대된 품목으로,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원자재의 수입 증가는 원유 수입에 기인한 면이 크며, 더불어 대두, 현미, 면실, 잎담배와 같은 농업 분야의 대미 수입 확대도 영향을 미침.

표 6. 한국의 대미 용도별 수입 현황

(단위: %)

| 용도 | 2004~11년 연평균 증감률 | | 2011년 비중 | | 2011-19년 연평균 증감률 | | 2019년 비중 | |
|-----|---------------------|------|----------|------|---------------------|------|----------|------|
|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 원자재 | 12.6 | 19.2 | 20.1 | 31.2 | 6.0 | -4.1 | 23.2 | 23.2 |
| 자본재 | 6.0 | 8.6 | 19.8 | 11.9 | 1.7 | 0.2 | 16.3 | 12.6 |
| 중간재 | 3.4 | 11.0 | 47.0 | 48.7 | 3.2 | -0.4 | 43.5 | 49.3 |
| 소비재 | 14.6 | 13.2 | 12.5 | 8.2 | 8.0 | 7.2 | 16.7 | 14.8 |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2. 1. 20).

- [기술수준별 수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해 보면 고기술 산업의 품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FTA 발효 후 고기술 품목의 수출 증가속도는 대세계 평균대비 더욱 빨라졌을 뿐 아니라 2019년 기준 대미는 물론 대세계 수출에서도 고기술 품목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 수출의 구조가 고기술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함.²⁰⁾

20) 품목의 기술수준은 OECD의 Technology Intensity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로 분류하며, ISIC(rev.3) 기준 제조업(ISIC 15~37)만을 대상으로 함.

-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고기술 품목을 살펴보면 컴퓨터 부품, 트랙터,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 배전반, 내연기관의 엔진 등 주로 기계, 화학, 전기전자 산업의 중간재와 자본재임.
 - 소비재로 분류되는 자동차(특히 소형차, 대형차, 전기자동차) 역시 고기술 품목으로 수출비중이 높음.
- FTA 발효 후 중기술 산업의 수출 규모에는 크게 변화가 없으며, 대표적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제 판, 기계용 플라스틱 부분품, 철강관과 같은 고무플라스틱 및 철강산업의 중간재를 들 수 있음.

표 7. 한국의 대미 기술수준별 수출 현황

(단위: %)

| 기술수준 | 2004~11년 연평균 증감률 | | 2011년 비중 | | 2011-19년 연평균 증감률 | | 2019년 비중 | |
|--------|---------------------|------|----------|------|---------------------|------|----------|------|
|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 고기술 산업 | 3.5 | 10.3 | 75.9 | 62.4 | 3.6 | 1.3 | 77.3 | 71.0 |
| 중기술 산업 | 11.3 | 18.3 | 19.2 | 32.1 | 2.5 | -4.0 | 18.0 | 23.8 |
| 저기술 산업 | -6.6 | 2.5 | 4.5 | 4.7 | 2.9 | -1.0 | 4.3 | 4.5 |
| 기타 산업 | 8.2 | 13.1 | 0.4 | 0.7 | 3.1 | -0.7 | 0.4 | 0.6 |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2. 1. 20).

- [기술수준별 수입]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고기술 산업 품목은 FTA 발효 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세계 평균 비중 대비 높은 수준으로 대미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고기술 수입품목은 기계 산업의 자본재(자동조절제어용 기기, 교류발전기), 화학 산업의 중간재(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 스티렌), 전기전자의 중간재와 자본재(디지털 전자집적회로, 디지털형 처리장치)임.
 - 특히 FTA 발효 기간에 메탄올, 교류발전기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100%를 상회하였으며, 소비재에 해당하는 소형차와 전기자동차의 수입 증가세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남.
 - 최근에는 프로판, 경질석유 조제품, 자동차 타이어와 같은 중기술 산업 품목의 수입 증가세가 큰 편이며, 한국의 대미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대두 등 기술수준을 분류할 수 없는 품목의 비중은 2019년 27.3%로 대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표 8. 한국의 대미 기술수준별 수입 현황

(단위: %)

| 기술수준 | 2004~11년 연평균 증감률 | | 2011년 비중 | | 2011-19년 연평균 증감률 | | 2019년 비중 | |
|--------|---------------------|------|----------|------|---------------------|------|----------|------|
|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대미 | 대세계 |
| 고기술 산업 | 4.1 | 9.0 | 61.6 | 37.3 | 1.7 | 2.2 | 50.7 | 46.3 |
| 중기술 산업 | 8.0 | 12.8 | 7.4 | 18.6 | 9.2 | -3.5 | 10.8 | 14.5 |
| 저기술 산업 | 10.7 | 10.9 | 10.9 | 8.1 | 4.5 | 3.8 | 11.1 | 11.5 |
| 기타 산업 | 13.1 | 19.2 | 20.2 | 36.0 | 8.2 | -3.7 | 27.3 | 27.7 |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2.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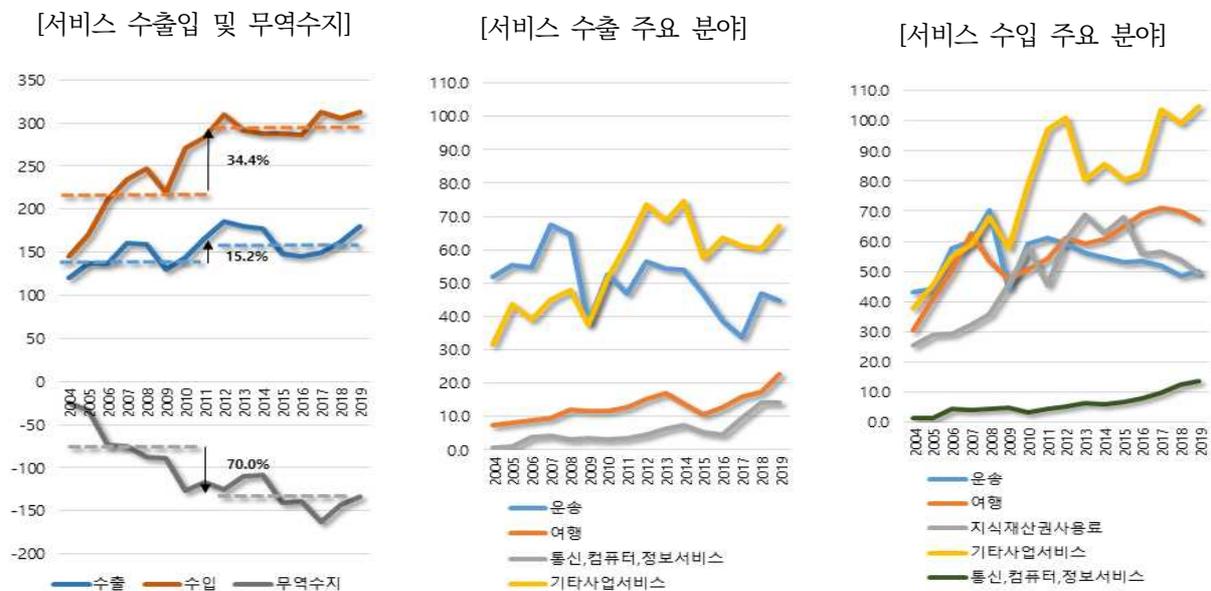
2) 서비스 무역

■ 미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무역 국가로서 FTA 발효 전(2004~11)보다 이후(2012~19)에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서비스 무역량을 보였으며, 특히 대미 서비스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양국간 FTA 발효 전(2004~11년) 평균 144억 달러에서 발효 후(2012~19년) 평균 166억 달러로 15.2% 증가함.
-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은 평균 223억 달러에서 299억 달러로 34.4% 증가하여 여타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수입과 비교했을 때 증가액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서비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연평균 78억 달러(2004~11년)에서 133억 달러(2012~19년)로 확대됨.

그림 2.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주: 서비스수지 통계에서 서비스수입(credit)을 수출로, 서비스지급(debit)을 수입으로 고려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지역별 경상수지.

■ [서비스 수출] FTA 발효 이후 기타 사업서비스²¹⁾의 대미 수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운데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와 여행서비스의 대미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기타 사업서비스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전(2004~11년)보다 이후(2012~19년)에 평균 46.8% 증가하여 최대 수출 분야로 올라섰으며, 여행(52.5% 증가)과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178.6% 증가)도 높은 증가세 속에서 수출액이 크게 확대됨.
- 반면 운송서비스의 수출은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FTA 발효 전 기간에 비해 평균 12.9% 감소함.

21) 기타 사업서비스는 △R&D 서비스 △전문직(법률·회계) 및 경영컨설팅(경영컨설팅, 광고, 시장조사 등 포함) △기술(건축,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환경서비스, 임대, 기타)를 포함하는 분야로,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활동을 할 때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임.

■ [서비스 수입]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FTA 발효 이후 기타 사업서비스에 대한 대미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의 대미 수입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 대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

- 한국의 대미 기타 사업서비스 수입은 FTA 발효 전(2004~11년) 평균 62억 달러에서 발효 후(2012~19년) 평균 92억 달러로 47.9% 증가하여 전체 대미 서비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0%에서 30.8%로 상승함.
 - 같은 기간 기타 사업서비스의 수입 증가율은 여타 국가·지역에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평균 수입 증가액은 미국이 최대(미국 30억 달러, EU 24억 달러, 동남아 17억 달러, 중국 14억 달러)임.
- 같은 기간 한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57.8% 증가)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139.8% 증가) 대미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전체 대미 서비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6.9%에서 19.9%, 1.6%에서 2.8%로 증가함.
- 다만 한국의 대미 운송 수입은 2011년 이래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FTA 발효 전에 비해 3.1% 감소함.

표 9. 한국의 대미 및 대세계 서비스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서비스 수출 | | | | 서비스 수입 | | | |
|-----|-------------------|-------------------|-----------|-----------|-------------------|-------------------|-----------|-----------|
| | 2004~11년 평균 금액 | 2012~19년 평균 금액 | 기간 증가율 | 기간 증가액 | 2004~11년 평균 금액 | 2012~19년 평균 금액 | 기간 증가율 | 기간 증가액 |
| 대미국 | 14,428 | 16,615 | 15.2 | 2,187 | 22,253 | 29,916 | 34.4 | 7,663 |
| 대세계 | 70,168 | 100,986 | 43.9 | 30,818 | 80,392 | 118,434 | 47.3 | 38,043 |
| 중국 | 9,563 | 19,206 | 100.8 | 9,643 | 9,834 | 15,526 | 57.9 | 5,692 |
| 일본 | 7,805 | 9,184 | 17.7 | 1,379 | 8,226 | 9,789 | 19.0 | 1,562 |
| EU | 8,071 | 11,040 | 36.8 | 2,969 | 15,635 | 21,958 | 40.4 | 6,323 |
| 동남아 | 13,156 | 22,983 | 74.7 | 9,826 | 13,054 | 22,954 | 75.8 | 9,899 |
| 중동 | 7,704 | 9,071 | 17.7 | 1,367 | 3,377 | 5,863 | 73.6 | 2,486 |
| 중남미 | 2,357 | 3,075 | 30.4 | 717 | 933 | 1,711 | 83.4 | 778 |
| 기타 | 7,084 | 9,813 | 38.5 | 2,729 | 7,079 | 10,717 | 51.4 | 3,638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지역별 경상수지.

글상자 2. 미국 통계 기준 한미 서비스 무역 현황

■ US BEA의 서비스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42.8%와 7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미 FTA 이후 양국간 서비스 무역의 확대 규모가 한국의 통계보다 더 크게 나타남.

- 대미 서비스 수출에서는 금액 비중이 높은 운송(23.4% 증가)과 여행(11.2% 증가)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반면, 개인·문화·여가서비스(456.9% 증가), 지식재산권 사용료(387.7% 증가), 보험(370.3% 증가), 기타 사업서비스(113.3% 증가) 등이 크게 증가함.
- 대미 서비스 수입의 경우 여행(79.2% 증가), 지식재산권 사용료(89.0% 증가), 운송(53.5% 증가), 기타 사업서비스(58.3% 증가) 등 대부분의 분야(단, 보험 제외)에서 5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함.

미국 통계 기준,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 현황

| 구분 | 서비스 수출 | | | 서비스 수입 | | | 서비스 무역수지 | | |
|--------------|---------------|---------------|--------------|---------------|---------------|--------------|---------------|---------------|--------------|
| | 발효 전 (억달러) | 발효 후 (억달러) | 기간 증가율(%) | 발효 전 (억달러) | 발효 후 (억달러) | 기간 증가율(%) | 발효 전 (억달러) | 발효 후 (억달러) | 기간 증가율(%) |
| 합계 | 69.0 | 98.5 | 42.8 | 127.4 | 223.9 | 75.7 | -58.4 | -125.4 | 114.5 |
| 운송 | 35.2 | 43.4 | 23.4 | 24.9 | 38.2 | 53.5 | 10.3 | 5.2 | -49.4 |
| 여행 | 9.4 | 10.4 | 11.2 | 40.5 | 72.6 | 79.2 | -31.1 | -62.2 | 99.6 |
| 보험 | 0.2 | 1.2 | 370.3 | 1.9 | 2.5 | 32.4 | -1.7 | -1.4 | -17.9 |
| 금융 | 2.4 | 3.1 | 31.1 | 7.0 | 11.5 | 64.9 | -4.6 | -8.4 | 82.4 |
| 지식재산권사용료 | 0.5 | 2.5 | 387.7 | 29.3 | 55.3 | 89.0 | -28.7 | -52.8 | 83.6 |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 1.0 | 1.3 | 28.2 | 2.3 | 7.0 | 197.2 | -1.4 | -5.7 | 318.2 |
| 기타사업서비스 | 4.0 | 8.6 | 113.3 | 14.1 | 22.3 | 58.3 | -10.1 | -13.7 | 36.4 |
| 개인·문화·여가서비스 | 0.4 | 2.2 | 456.9 | 2.5 | 4.6 | 82.4 | -2.2 | -2.5 | 13.9 |

주: 교역 규모가 미미한 분야(가공서비스)와 자료가 유용하지 않은 분야(가공서비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자료 확보가 어려운 분야(건설, 정부서비스)는 제외함.

자료: U.S. BEA, <https://www.bea.gov/>(검색일: 2022. 2. 7).

- [한미 FTA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의 영형 한미 FTA에서 서비스 분야 중 법률, 회계, 통신, 방송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²²⁾하였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미국기업의 국내 진출은 현재까지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법률서비스에 대한 3단계 개방을 모두 이행함에 따라 국내에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은 물론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미국 법무회사 간의 합작법무회사 설립까지 허용된 상태이나, 2022년 2월 기준 국내에 설립된 합작법무회사는 없는 상태임.
 - 한미 FTA를 비롯하여 EU, 호주, 중국 등과의 FTA에서 법률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2021년 11월까지 국내에 34개의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가 설립(본점사무소 소재국 기준: 미국계 25개 사, 영국계 6개 사, 중국계 2개 사, 호주계 1개 사)되었으나, 국내 시장의 포화 등으로 설립인가 취소 사례²³⁾도 발생²⁴⁾
 - 국내에서 자격을 승인받은 외국법 자문사는 2021년 11월 기준 207명(원자격국 기준: 미국 150명, 영국 36명, 호주 10명, 중국 8명, 기타 3명)이며, 국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활동²⁵⁾
- 회계서비스 시장도 한미 FTA 등에 따라 2단계 개방을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주요 국내 회계법인이 외국의 대형 회계법인들과 제휴를 맺고 Member Firm 형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 개방의 영향은 미미한 상황임.
 -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회계법인 207개 사 중 35개 사가 외국의 회계법인과 member firm, correspondence, associate 등의 형태로 제휴²⁶⁾

22)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시장 주요 개방 약속 내용은 김영귀 외(2014),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4, No. 1, p. 10의 [표 6] 및 pp. 9~13을 참고하기 바람.

23) 미국계 3개 사와 영국계 1개 사는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영국계 2개 사는 미국 및 호주 법인 산하의 사무소로 변경(△디엘에이 파이퍼 유케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 디엘에이 파이퍼 유에스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엘엘피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하여 설립인가를 받음. 법무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법률시장 개방)공지사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현황(List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_21.11.19 기준」 참고

24) 전계서, 「법률시장 개방 10년에 외국로법 무뎠던 한국」(2021. 6. 30), 『매일경제』; 「한국진출 외국계 로펌 포화상태… ‘전략적 후퇴’ 선택」(2018. 8. 16), 『법률신문』 참고

25) 법무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법률시장 개방)공지사항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현황(List of Foreign Legal Consultants)_21.11.19 기준」 참고

- 한미 FTA 발효 후 방송서비스 분야의 개방 약속이 이행됨에 따라 미국 사업자들이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투자자로 히스토리, 라이프타임,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애니맥스, 애니맥스+, 디즈니채널, 디즈니주니어, 카툰 네트워크, 부메랑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법인(방송 채널 사용사업자, PP)의 지분을 100% 취득함.
 - o 최근 OTT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서비스 간접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협정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그리고 실연 및 음반 발행 또는 창작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재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o U.S. BEA에 따르면 시청각 제품의 복제·배포 관련 한국의 대미 라이선스 수입이 FTA 발효 전 평균 1,9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4,800만 달러로 152.7% 증가

3) 투자

■ 한미 FTA 발효 이후(2012~19년) 미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대상국이자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상대국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FTA 발효 전(2004~11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게 됨.

표 10.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금액 기준)

| 투자대상국 | 2004~11년 평균 | | | 2012~19년 평균 | | | 증감액 | 증감률 |
|---------|-------------|------|----|-------------|------|----|--------|---------|
| | 금액 | 비중 | 순위 | 금액 | 비중 | 순위 | | |
| 중국 | 3,571 | 19.0 | 1 | 4,128 | 10.3 | 2 | 557 | 15.6 |
| 미국 | 3,485 | 18.6 | 2 | 10,048 | 25.0 | 1 | 6,563 | 188.3 |
| 홍콩 | 1,316 | 7.0 | 3 | 2,053 | 5.1 | 5 | 737 | 56.0 |
| 영국 | 896 | 4.8 | 4 | 1,075 | 2.7 | 9 | 179 | 19.9 |
| 베트남 | 811 | 4.3 | 5 | 2,218 | 5.5 | 4 | 1,407 | 173.5 |
| 캐나다 | 720 | 3.8 | 6 | 847 | 2.1 | 10 | 127 | 17.7 |
| 네덜란드 | 514 | 2.7 | 7 | 744 | 1.9 | 12 | 231 | 44.9 |
| 인도네시아 | 482 | 2.6 | 8 | 735 | 1.8 | 13 | 253 | 52.5 |
| 호주 | 477 | 2.5 | 9 | 1,358 | 3.4 | 6 | 881 | 184.9 |
| 브라질 | 446 | 2.4 | 10 | 571 | 1.4 | 16 | 124 | 27.9 |
| 싱가포르 | 432 | 2.3 | 11 | 1,312 | 3.3 | 8 | 881 | 204.0 |
| 케이만군도 | 383 | 2.0 | 12 | 4,084 | 10.2 | 3 | 3,701 | 965.7 |
| 룩셈부르크 | 66 | 0.3 | 37 | 1,328 | 3.3 | 7 | 1,262 | 1,926.8 |
| 상위 10개국 | 12,719 | 67.8 | | 28,451 | 70.8 | | 15,733 | 123.7 |
| 전 세계 | 18,769 | | | 40,172 | | | 21,403 | 114.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22. 1. 14).

표 11. 한국의 주요 투자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도착금액 기준)

| 투자국 | 2004~11년 평균 | | | 2012~19년 평균 | | | 증감액 | 증감률 |
|---------|-------------|------|----|-------------|------|----|-------|---------|
| | 금액 | 비중 | 순위 | 금액 | 비중 | 순위 | | |
| 일본 | 1,364 | 17.3 | 1 | 1,819 | 13.8 | 2 | 455 | 33.4 |
| 네덜란드 | 1,210 | 15.3 | 2 | 1,167 | 8.9 | 5 | -44 | -3.6 |
| 미국 | 1,202 | 15.2 | 3 | 1,876 | 14.3 | 1 | 674 | 56.1 |
| 영국 | 960 | 12.2 | 4 | 681 | 5.2 | 7 | -279 | -29.0 |
| 독일 | 486 | 6.2 | 5 | 298 | 2.3 | 11 | -188 | -38.7 |
| 싱가포르 | 361 | 4.6 | 6 | 1,358 | 10.3 | 4 | 997 | 276.1 |
| 프랑스 | 325 | 4.1 | 7 | 252 | 1.9 | 14 | -74 | -22.7 |
| 중국 | 213 | 2.7 | 8 | 521 | 4.0 | 8 | 308 | 145.0 |
| 몰타 | 183 | 2.3 | 9 | 1,386 | 10.5 | 3 | 1,203 | 657.4 |
| 케이만군도 | 178 | 2.2 | 10 | 350 | 2.7 | 10 | 172 | 97.0 |
| 홍콩 | 99 | 1.3 | 14 | 731 | 5.6 | 6 | 632 | 636.8 |
| 룩셈부르크 | 39 | 0.5 | 22 | 465 | 3.5 | 9 | 426 | 1,079.6 |
| 상위 10개국 | 6,423 | 81.4 | | 10,353 | 78.8 | | 3,930 | 61.2 |
| 전체 | 7,893 | | | 13,144 | | | 5,251 | 66.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 2022. 1. 14).

- 대미국 해외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전(2004~11년) 평균 35억 달러에서 발효 후(2012~19년) 평균 100억 달러로 188.3%(66억 달러) 증가하여 같은 기간 대세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114%)을 상회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8.6%에서 25.0%로 증가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상대국으로 부상함.
 -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전(2004~11년) 평균 12억 달러에서 발효 후(2012~19년) 평균 19억 달러로 56.1%(7억 달러) 증가하여 같은 기간 대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66.5%)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증가의 절대 규모 면에서 여타 주요국을 대부분 앞서면서 미국이 FTA 발효 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3위국에서 발효 후 1위국으로 올라서게 됨.
- [산업별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제조업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2012~19년) 특히 대미국 수출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화학고무플라스틱, 기계에서 대미국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부동산, 도소매에 대한 대미국 투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FTA 발효 이후(2011~19년) 제조업에 대한 대미국 해외직접투자는 화학고무플라스틱(3.6억 달러)과 기계(1.9억 달러)에서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산업은 앞선 분석에서 같은 기간 대미국 무역 증가율이 대세계 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던 산업이기도 함.
 -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부동산, 도소매로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가 FTA 발효 후 각각 22억 달러, 18억 달러, 11억 달러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대미 해외직접투자 증가액의 79.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FTA 발효 후 대미 서비스 수출입이 크게 확대된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가 같은 기간 3.1억 달러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증가폭을 기록함.

표 12.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금액 기준)

| 산업 | 대미국 | | | | 전 세계 | | | |
|---------------|----------------|----------------|-------|---------|----------------|----------------|--------|-------|
| | 2004~11년 평균 | 2012~19년 평균 | 증감액 | 증감률 | 2004~11년 평균 | 2012~19년 평균 | 증감액 | 증감률 |
| 농축수산물 | 52 | 198 | 147 | 284.2 | 459 | 805 | 346 | 75.3 |
| 광업 | 691 | 527 | -164 | -23.7 | 3,710 | 4,207 | 498 | 13.4 |
| 섬유직물의복기타 | 73 | 111 | 38 | 51.6 | 768 | 886 | 117 | 15.3 |
| 화학고무플라스틱 | 92 | 457 | 364 | 394.5 | 977 | 1,776 | 799 | 81.7 |
| 비금속광물제품 | 10 | 16 | 6 | 56.7 | 132 | 100 | -32 | -24.1 |
| 1차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 48 | 55 | 7 | 15.6 | 791 | 898 | 107 | 13.5 |
| 자동차 | 245 | 85 | -160 | -65.2 | 1,102 | 1,805 | 703 | 63.8 |
| 기타 수송기기 | 1 | 41 | 40 | 4,241.4 | 349 | 441 | 92 | 26.5 |
| 전자 | 96 | 137 | 41 | 43.0 | 1,426 | 2,610 | 1,184 | 83.1 |
| 기계 | 120 | 305 | 185 | 154.3 | 686 | 1,693 | 1,007 | 146.9 |
| 전기가스수도환경 | 44 | 126 | 82 | 185.8 | 405 | 1,125 | 720 | 177.7 |
| 건설업 | 49 | 70 | 21 | 44.1 | 478 | 1,179 | 701 | 146.6 |
| 도소매 | 646 | 1,779 | 1,133 | 175.3 | 2,131 | 3,520 | 1,389 | 65.2 |
| 정보통신 | 164 | 478 | 313 | 190.7 | 397 | 1,132 | 735 | 185.3 |
| 금융보험 | 683 | 2,927 | 2,245 | 328.8 | 2,367 | 10,830 | 8,462 | 357.5 |
| 부동산 | 148 | 1,979 | 1,831 | 1,237.7 | 1,184 | 4,529 | 3,346 | 282.7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76 | 178 | 102 | 134.1 | 230 | 592 | 362 | 157.3 |
| 기타 서비스 | 248 | 579 | 331 | 133.6 | 1,179 | 2,046 | 867 | 73.6 |
| 전 산업 | 3,485 | 10,048 | 6,563 | 188.3 | 18,769 | 40,172 | 21,403 | 114.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22. 1. 14).

■ [기술수준별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FTA 발효 이후 대미 해외직접투자액의 70% 이상은 고기술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저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고기술 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전기장비 등)에 대한 대미국 투자는 FTA 발효 후 4.8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조업 투자 증가액 6.7억 달러의 71.6%에 달함.
- 저기술 산업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료품과 기타 제품에 대한 대미국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기술 산업의 투자도 FTA 발효 후 1.8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대세계 평균(35.8%)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150.8%)을 기록함.

표 13.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금액 기준)

| 기술수준 | 대미국 | | | | 전 세계 | | | |
|--------|----------------|----------------|-----|-------|----------------|----------------|-------|------|
| | 2004~11년 평균 | 2012~19년 평균 | 증감액 | 증감률 | 2004~11년 평균 | 2012~19년 평균 | 증감액 | 증감률 |
| 고기술 산업 | 538 | 1,016 | 478 | 88.9 | 3,823 | 7,474 | 3,651 | 95.5 |
| 중기술 산업 | 74 | 80 | 6 | 7.9 | 1,642 | 1,851 | 209 | 12.7 |
| 저기술 산업 | 122 | 306 | 184 | 150.8 | 1,132 | 1,538 | 406 | 35.8 |
| 제조업 | 734 | 1,402 | 668 | 91.0 | 6,597 | 10,863 | 4,266 | 64.7 |

주: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34에 해당하는 산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22. 1. 14).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한국 제조업의 대미국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에서와 유사하게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국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던 자동차, 화학고무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서비스업 역시 대미국 서비스 수출입 증가율이 높았던 정보통신 서비스업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표 14. 한국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도착금액 기준)

| 산업 | 대미국 | | | | 전 세계 | | | |
|---------------|----------------|----------------|------|---------|----------------|----------------|-------|-------|
| | 2004~11년 평균 | 2012~19년 평균 | 증감액 | 증감률 | 2004~11년 평균 | 2012~19년 평균 | 증감액 | 증감률 |
| 농축수산물 | 40 | 2 | -38 | -94.1 | 86 | 128 | 42 | 49.7 |
| 광업 | 0 | 0 | 0 | -100.0 | 3 | 1 | -2 | -81.2 |
| 섬유직물의복기타 | 19 | 3 | -16 | -85.6 | 88 | 172 | 84 | 95.0 |
| 화학고무플라스틱 | 50 | 221 | 171 | 340.4 | 611 | 1,901 | 1,290 | 211.3 |
| 비금속광물제품 | 4 | 14 | 10 | 237.7 | 135 | 453 | 318 | 235.5 |
| 1차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 4 | 17 | 13 | 295.7 | 176 | 162 | -13 | -7.5 |
| 자동차 | 27 | 419 | 391 | 1,430.0 | 400 | 1,076 | 676 | 169.2 |
| 기타 수송기기 | 21 | 1 | -20 | -94.7 | 89 | 24 | -66 | -73.6 |
| 전자 | 64 | 24 | -39 | -61.7 | 890 | 436 | -454 | -51.0 |
| 기계 | 44 | 35 | -9 | -19.4 | 376 | 552 | 176 | 46.9 |
| 전기가스수도환경 | 3 | 1 | -3 | -79.6 | 67 | 164 | 97 | 145.7 |
| 건설업 | 38 | 0 | -37 | -98.9 | 78 | 176 | 98 | 125.8 |
| 도소매 | 46 | 174 | 128 | 277.4 | 859 | 1,175 | 316 | 36.8 |
| 정보통신 | 115 | 485 | 370 | 322.0 | 576 | 1,374 | 797 | 138.3 |
| 금융보험 | 622 | 314 | -308 | -49.5 | 2,455 | 3,164 | 709 | 28.9 |
| 부동산 | 42 | 20 | -22 | -53.4 | 354 | 777 | 423 | 119.7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28 | 23 | -6 | -20.3 | 188 | 511 | 322 | 171.3 |
| 기타 서비스 | 34 | 122 | 89 | 263.9 | 463 | 899 | 435 | 94.0 |
| 전 산업 | 1,202 | 1,876 | 674 | 56.1 | 7,893 | 13,144 | 5,251 | 66.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 2022. 1. 14).

- 제조업에서 FTA 발효 이후(2012~19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 산업은 자동차(3.9억 달러)와 화학고무플라스틱(1.7억 달러)으로, 이 두 산업은 같은 기간 대미국 무역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이기도 함.
 - 특히 자동차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FTA 발효 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전 산업 투자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 2.3%에서 발효 후 22.3%로 급등
- 서비스업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대미 서비스 무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던 정보통신 서비스업에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으며(3.7억 달러 증가), 그 뒤를 이어 도소매업에 대한 대미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하였음(1.3억 달러 증가).
 - 정보통신이 전체 대미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 9.6%에서 발효 후 25.8%로 증가하여 제조업·서비스업을 통틀어 평균 투자유치금액 기준 1위 산업으로 부상

■ [기술수준별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한국 제조업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19년) 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고기술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FTA 발효 후 4.9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증가율 역시 246.7%로 전 세계 평균(57.6%)크게 상회했으며 미국의 대한국 투자에서 고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이전 72%에서 93%로 급격히 증가함. 반면 전 세계의 대한국 투자에서 고기술 산업 비중은 발효 이전 75%에서 이후 69%로 감소함.

○ 중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증가하였으나, 고기술 산업에 비해 투자금액 및 증가율 수준이 낮음.

표 15.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도착금액 기준)

| 기술수준 | 대미국 | | | | 전 세계 | | | |
|--------|----------------|----------------|-----|-------|----------------|----------------|-------|-------|
| | 2004~11년 평균 | 2012~19년 평균 | 증감액 | 증감률 | 2004~11년 평균 | 2012~19년 평균 | 증감액 | 증감률 |
| 고기술 산업 | 198 | 687 | 489 | 246.7 | 2,134 | 3,362 | 1,228 | 57.6 |
| 중기술 산업 | 17 | 45 | 28 | 164.9 | 546 | 1,246 | 701 | 128.4 |
| 저기술 산업 | 58 | 4 | -55 | -94.0 | 170 | 284 | 114 | 67.0 |
| 제조업 | 274 | 736 | 463 | 169.1 | 2,849 | 4,892 | 2,043 | 71.7 |

주: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34에 해당하는 산업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 2022. 1. 14).

4) 수출 부가가치

■ 앞서 분석한 대로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간 고기술·중간재 상품 무역과 정보통신 및 사업 관련 서비스 등의 중간재 서비스 무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호 투자가 증가하면서 각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4%에서 2019년 16.5%로 약 2.2배 증가함.

-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사용된 미국 부가가치 절대 규모는 2011년 142억 달러에서 2019년 237억 달러로 증가
-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가 2011년 1,916억 달러(29.4%)에서 2019년 1,439억 달러(21.9%)로 감소하는 등 한국 수출의 해외 의존도가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한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금액이나 비중 면에서 증가해왔다는 점이 특징적
- 특히 한국의 상위 10대 수출 산업의 수출에 체화된 해외 부가가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모두 상승하였고, 이 중 3개 서비스업(해상운송, 항공운송, 임대 및 사업서비스) 수출에 대한 미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전체 해외 부가가치 기여도의 20%를 초과

- 미국의 경우 역시 대세계 수출에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2%에서 2019년 3.1%로 약 1.4배 증가함.

- 미국의 대세계 수출에 사용된 해외 부가가치가 연평균 2.9% 증가(2011년 1,550억 달러 → 2019년 1,947억 달러)한 데 반해 한국 부가가치는 연평균 7.1% 증가(2011년 35억 달러 → 2019년 60억 달러)

표 16. 한국의 대세계 수출 부가가치 분해

(단위: 백만 달러, %)

| 산업 | 2011년 | | | | | | 2019년 | | | | | |
|-----------------|---------|---------|---------|---------|-------|---------|---------|---------|---------|---------|-------|---------|
| | 총수출 | 국내 부가가치 | 해외 부가가치 | 미국 부가가치 | 미국 비중 | 순수 중복계산 | 총수출 | 국내 부가가치 | 해외 부가가치 | 미국 부가가치 | 미국 비중 | 순수 중복계산 |
| 섬유 및 섬유제품 | 19,080 | 13,306 | 3,633 | 299 | 8.2 | 2,141 | 9,905 | 6,762 | 1,703 | 238 | 14.0 | 1,441 |
| 코르크, 석유정제 및 핵연료 | 57,771 | 13,762 | 31,264 | 918 | 2.9 | 12,744 | 47,521 | 19,211 | 20,758 | 3,470 | 16.7 | 7,553 |
| 화학 및 화학제품 | 63,368 | 35,408 | 17,386 | 1,366 | 7.9 | 10,574 | 82,431 | 55,029 | 18,712 | 3,660 | 19.6 | 8,690 |
| 고무 및 플라스틱 | 7,990 | 5,146 | 1,883 | 183 | 9.7 | 961 | 17,336 | 12,304 | 3,141 | 552 | 17.6 | 1,891 |
| 1차금속 및 금속제품 | 51,708 | 28,487 | 14,840 | 674 | 4.5 | 8,381 | 60,448 | 36,294 | 14,678 | 1,942 | 13.2 | 9,476 |
| 기계 | 33,545 | 22,073 | 9,889 | 752 | 7.6 | 1,582 | 57,997 | 42,208 | 13,873 | 2,108 | 15.2 | 1,916 |
| 전기 및 광학기기 | 219,263 | 132,613 | 59,092 | 5,145 | 8.7 | 27,558 | 186,240 | 141,196 | 27,175 | 3,966 | 14.6 | 17,868 |
| 운송장비 | 122,430 | 79,264 | 39,888 | 3,516 | 8.8 | 3,279 | 76,459 | 48,524 | 23,358 | 3,555 | 15.2 | 4,577 |
| 해상운송 | 11,202 | 7,357 | 2,510 | 176 | 7.0 | 1,334 | 5,094 | 2,943 | 1,123 | 267 | 23.8 | 1,028 |
| 항공운송 | 8,982 | 5,598 | 2,609 | 235 | 9.0 | 775 | 11,598 | 6,980 | 3,847 | 900 | 23.4 | 771 |
| 임대 및 사업서비스 | 15,633 | 13,381 | 1,641 | 167 | 10.2 | 611 | 23,416 | 20,330 | 2,333 | 478 | 20.5 | 753 |
| 전 산업 | 652,072 | 388,819 | 191,606 | 14,180 | 7.4 | 71,648 | 657,824 | 455,040 | 143,866 | 23,671 | 16.5 | 58,918 |

주: 1) 35개 산업 중 총수출 규모가 큰 10개 산업만 표로 나타냄.
 2) 국내 부가가치에는 국내로 환류된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음.
 3) 미국 비중은 해외 부가가치에서 미국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2011 및 2019년 ADB WRIO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미국 수출에서 사용한 한국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의 2대 수출산업인 전기 및 광학기기와 운송장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위 10대 수출산업 모두에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이 상승

표 17. 미국의 대세계 수출 부가가치 분해

(단위: 백만 달러, %)

| 산업 | 2011년 | | | | | | 2019년 | | | | | |
|-----------------|-----------|-----------|---------|---------|-------|---------|-----------|-----------|---------|---------|-------|---------|
| | 총수출 | 국내 부가가치 | 해외 부가가치 | 한국 부가가치 | 한국 비중 | 순수 중복계산 | 총수출 | 국내 부가가치 | 해외 부가가치 | 한국 부가가치 | 한국 비중 | 순수 중복계산 |
| 광업 | 35,259 | 32,273 | 1,651 | 20 | 1.2 | 1,334 | 106,087 | 97,177 | 4,536 | 86 | 1.9 | 4,374 |
| 음식료품 및 담배 | 59,893 | 52,696 | 6,504 | 105 | 1.6 | 693 | 112,537 | 99,161 | 11,650 | 231 | 2.0 | 1,726 |
| 펄프, 종이 및 인쇄 | 75,914 | 69,193 | 4,724 | 121 | 2.6 | 1,997 | 39,409 | 36,733 | 1,663 | 48 | 2.9 | 1,013 |
| 코르크, 석유정제 및 핵연료 | 112,726 | 77,193 | 24,357 | 105 | 0.4 | 11,176 | 104,834 | 76,236 | 19,268 | 132 | 0.7 | 9,330 |
| 화학 및 화학제품 | 156,185 | 130,890 | 15,253 | 321 | 2.1 | 10,042 | 210,359 | 176,634 | 19,215 | 476 | 2.5 | 14,510 |
| 1차금속 및 금속제품 | 69,525 | 55,138 | 7,881 | 150 | 1.9 | 6,506 | 109,789 | 93,212 | 8,164 | 239 | 2.9 | 8,413 |
| 기계 | 118,373 | 98,454 | 15,230 | 414 | 2.7 | 4,688 | 160,199 | 135,055 | 18,339 | 691 | 3.8 | 6,805 |
| 전기 및 광학기기 | 139,409 | 125,454 | 8,672 | 344 | 4.0 | 5,283 | 228,497 | 211,296 | 11,041 | 535 | 4.8 | 6,159 |
| 운송장비 | 186,632 | 145,183 | 28,947 | 1,018 | 3.5 | 12,501 | 345,112 | 264,598 | 53,682 | 2,281 | 4.2 | 26,833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169,586 | 163,617 | 4,577 | 120 | 2.6 | 1,392 | 175,345 | 168,802 | 4,360 | 128 | 2.9 | 2,183 |
| 금융보험 | 106,125 | 101,587 | 2,866 | 45 | 1.6 | 1,671 | 88,585 | 82,246 | 4,010 | 66 | 1.6 | 2,330 |
| 임대 및 사업서비스 | 162,306 | 154,491 | 4,004 | 107 | 2.7 | 3,812 | 266,717 | 253,585 | 7,642 | 219 | 2.9 | 5,490 |
| 전 산업 | 1,767,455 | 1,539,795 | 154,950 | 3,454 | 2.2 | 72,710 | 2,514,751 | 2,217,200 | 194,733 | 5,972 | 3.1 | 102,819 |

주: 1) 35개 산업 중 총수출 규모가 큰 10개 산업만 표로 나타냄.
 2) 국내 부가가치에는 국내로 환류된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음.
 3) 한국 비중은 해외 부가가치에서 한국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2011 및 2019년 ADB WRIO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3. 수출 부가가치 분해 작성 개요

분해방식: Wang, Wei, Zhu(2013)의 수출 부가가치 분해방식 이용

특 징: 수출에 사용된 부가가치를 국내 부가가치, 국내로 되돌아온 부가가치, 해외 부가가치, 순수한 중복계산 등 총 16개로 세분류할 수 있음.

$$\begin{aligned}
 \text{수 식: } E^{kl} = & (V^k B^{kk})^T \odot F^{kl} + (V^k L^{kk})^T \odot (A^{kl} B^{ll} F^{ll}) \\
 & + (V^k L^{kk})^T \odot [A^{kl} \sum_{t \neq k,l}^G B^{lt} F^{tt} + A^{kl} B^{ll} \sum_{t \neq k,l}^G F^{lt} + A^{kl} \sum_{t \neq k,l}^G B^{lt} \sum_{u \neq k,t}^G F^{tu}] \\
 & + (V^k L^{kk})^T \odot [A^{kl} B^{ll} F^{lk} + A^{kl} \sum_{t \neq k,l}^G B^{lt} F^{tk} + A^{kl} B^{lk} F^{kk}] \\
 & + (V^l B^{lk})^T \odot F^{kl} + (\sum_{t \neq k,l}^G V^t B^{tk})^T \odot F^{kl} \\
 & + (V^l B^{lk})^T \odot (A^{kl} L^{ll} F^{ll}) + (\sum_{t \neq k,l}^G V^t B^{tk})^T \odot (A^{kl} L^{ll} F^{ll}) \\
 & + (V^l B^{lk})^T \odot (A^{kl} L^{ll} E^{l*}) + (\sum_{t \neq k,l}^G V^t B^{tk})^T \odot (A^{kl} L^{ll} E^{l*}) \\
 & + (V^k L^{kk})^T \odot (A^{kl} B^{lk} \sum_{t \neq k}^G F^{kt}) + (V^k L^{kk})^T \odot (\sum_{t \neq k}^G A^{kt} B^{tk})^T \odot (A^{kl} X^l)
 \end{aligned}$$

k 는 수출국, l 은 수입국, V 는 부가가치행렬, B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블록행렬(black matrix), F 는 최종수요, L 은 레온티에프 역행렬, \odot 는 행렬의 아다마르 곱(Hadamard product)을 의미

분석자료: 63개국 35개 산업에 대한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나타낸 ADB MRIO database 이용

■ [한국 수출에 대한 미국 서비스업의 기여]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에서 사용한 미국의 부가가치에서 미국 서비스업, 특히 사업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던 대미국 서비스업 수입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대세계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중간재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함.

- 한미 FTA 이전(2011년)과 최근 연도(2019년)를 비교해 보면, 전 산업 및 제조업 모두에서 한국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미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대폭 증가(전 산업 수출 기준 5.7%p 증가, 제조업 수출 기준 5.3%p 증가)하여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기여 비중을 앞질렀음.

○ 한국 전 산업(제조업) 수출에서 사용된 미국의 부가가치 중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여 비율은 2011년 59:41(59:41)에서 2019년 47:53(48:52)으로 역전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국간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이 (기타)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같은 기간 대미 사업서비스 수입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중간재 성격의 생산자 서비스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BEA의 통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주로 전문직·경영·컨설팅 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정보 서비스, R&D 서비스 등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대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

표 18. 한국 수출상품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에서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¹⁾

| 구분 | 2011년(%) | | 2019년(%) | | 2011~19년 변화(%p) | |
|-------------------------------|----------|-------|----------|-------|-----------------|-----|
| | 전 산업 | 제조업 | 전 산업 | 제조업 | 전 산업 | 제조업 |
| 해외 부가가치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 - |
| 미국 부가가치 합계 | 7.4 | 7.3 | 16.5 | 15.9 | 9.1 | 8.6 |
| 미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 4.4 | 4.3 | 7.8 | 7.7 | 3.4 | 3.4 |
| 미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 3.0 | 3.0 | 8.7 | 8.2 | 5.7 | 5.3 |
| 미국 사업서비스 ²⁾ 의 부가가치 | 1.3 | 1.2 | 3.2 | 2.9 | 1.9 | 1.7 |

주: 1) Wang *et al.*(2013)의 수출 부가가치 분해방식을 적용하여 한국 수출상품(전체산업 및 제조업)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 미국 전체 및 산업별 부가가치를 추계하여 비중으로 환산함.
2) ADB, MRIO의 산업분류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로 분류된 분야임.
자료: ADB, MRIO, 2011년 및 2019년 자료.

표 19. 한국의 대미 주요 생산자 서비스 수입 현황

| 구분 | 2004~11년 평균(A) | | 2012~19년 평균(B) | | A~B | |
|----------------|------------------|-----------|------------------|-----------|--------------|--------------|
| | 금액 (백만 달러) | 비중 (%) | 금액 (백만 달러) | 비중 (%) | 기간 증가율(%) | 비중 변화(%p) |
| 서비스 수입 합계 | 12,740 | 100.0 | 22,387 | 100.0 | 75.7 | |
| 컴퓨터서비스 | 98 | 0.8 | 528 | 2.4 | 437.1 | 1.6 |
| 정보서비스 | 40 | 0.3 | 106 | 0.5 | 161.9 | 0.2 |
| R&D 서비스 | 144 | 1.1 | 367 | 1.6 | 155.8 | 0.5 |
| 전문직·경영·컨설팅 서비스 | 529 | 4.2 | 959 | 4.3 | 81.3 | 0.1 |
| 법률·회계·경영컨설팅 등 | 472 | 3.7 | 756 | 3.4 | 60.1 | -0.3 |
| 광고 관련 서비스 | 57 | 0.5 | 203 | 0.9 | 254.3 | 0.5 |
| 지식재산권 사용료 | 2,926 | 23.0 | 5,528 | 24.7 | 257.3 | 1.7 |

자료: U.S. BEA.

5) 혁신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²⁷⁾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결과 미국 특허등록 해외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전(2004~11년) 3위에서 발효 이후(2012~19년) 2위로 올라서게 됨.
 - 미국 특허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후로 (2004~11년 - 2012~19년) 한국 특허등록 건수 기간증가율(134.9%)은 특허등록 상위 10개국(74.9%) 및 외국 합계(80.1%)뿐만 아니라 대다수 미국 특허등록 주요국의 기간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 한국에 의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한미 FTA 발효 전(2004~11년) 평균 7,654건에서 FTA 발효 후(2012~19년) 평균 1만 7,981건으로 134.9% 증가(미국 특허등록 주요국 중 중국(662.0%), 인도(414.4%), 이스라엘(173.0%)에 이어 한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한국의 특허등록 건수가 여타국에 비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미국의 해외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FTA 발효 전 8.7%에서 발효 이후 11.3%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순위 또한 3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음.

27) 특허등록 건수는 기업의 혁신 활동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한미 FTA 이후 미국시장 진출과 관련된 한국기업의 혁신 활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미국 내 한국의 특허등록 건수를 주요 지표로 분석함.

표 20. 미국 특허등록 주요국 추이

(단위: 건, %)

| 등록국 | 2004~11년 평균 | | | 2012~19년 평균 | | | 증감건 | 증감률 |
|---------|-------------|------|----|-------------|------|----|--------|-------|
| | 건수 | 비중 | 순위 | 건수 | 비중 | 순위 | | |
| 일본 | 36,997 | 42.1 | 1 | 51,179 | 32.3 | 1 | 14,182 | 38.3 |
| 독일 | 10,130 | 11.5 | 2 | 16,191 | 10.2 | 3 | 6,061 | 59.8 |
| 한국 | 7,654 | 8.7 | 3 | 17,981 | 11.3 | 2 | 10,328 | 134.9 |
| 대만 | 6,694 | 7.6 | 4 | 11,284 | 7.1 | 4 | 4,590 | 68.6 |
| 캐나다 | 3,759 | 4.3 | 5 | 6,719 | 4.2 | 6 | 2,960 | 78.7 |
| 영국 | 3,537 | 4.0 | 6 | 6,428 | 4.1 | 8 | 2,891 | 81.7 |
| 프랑스 | 3,512 | 4.0 | 7 | 6,458 | 4.1 | 7 | 2,947 | 83.9 |
| 이탈리아 | 1,506 | 1.7 | 8 | 2,657 | 1.7 | 12 | 1,151 | 76.4 |
| 중국 | 1,367 | 1.6 | 9 | 10,417 | 6.6 | 5 | 9,050 | 662.0 |
| 네덜란드 | 1,352 | 1.5 | 10 | 2,507 | 1.6 | 14 | 1,155 | 85.5 |
| 이스라엘 | 1,331 | 1.5 | 11 | 3,633 | 2.3 | 9 | 2,302 | 173.0 |
| 인도 | 677 | 0.8 | 16 | 3,485 | 2.2 | 10 | 2,807 | 414.4 |
| 상위 10개국 | 76,507 | 87.0 | | 133,775 | 84.4 | | 57,269 | 74.9 |
| 외국 합계 | 87,979 | | | 158,467 | | | 70,488 | 80.1 |

주: 특허등록 연도 기준임.

자료: 미국 특허청(https://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h_at.htm#PartA1_1a, 검색일: 2022. 1. 19).

■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산업일수록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전자, 정보통신, 기계 산업에서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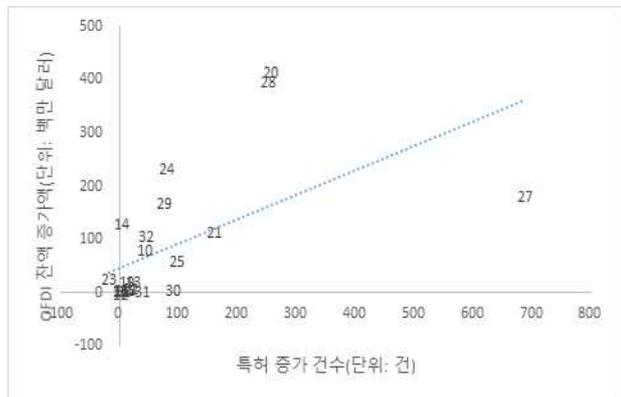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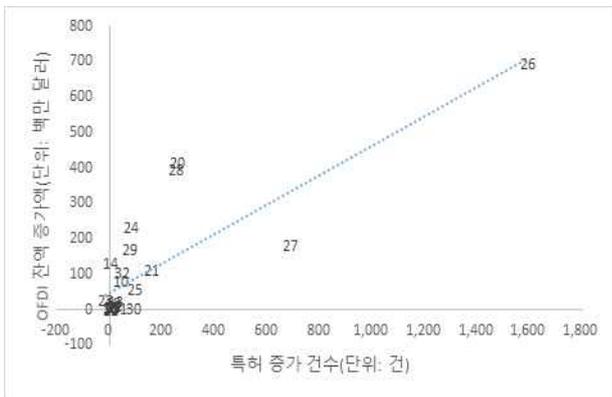
-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6(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27(전기장비), 28(기타 기계 및 장비) 등 한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액이 많이 증가한 산업에서 미국 내 한국의 특허등록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함.

○ 제조업 전 산업에 대한 상관계수는 0.823으로 높으며, 특허등록 건수 및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26산업을 제외한 경우에도 상관계수는 0.571로 높게 나타남.

그림 3. 한국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액과 미국 내 한국 특허등록 건수 차이 간의 산점도

A. 제조업 전 산업

B. 26산업 제외



주: 1) 산점도는 제조업(10~33)을 대상으로 하며, 2자리 숫자는 제4차 국제표준산업분류 2단위를 의미함.

2) 특허 증가 건수는 2008~11년과 2012~15년 평균 건수 차이이며, 해외직접투자 잔액 증가액은 2011년 잔액과 2015년 잔액의 차이임.

자료: 미국 특허청 CD-ROM 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검색일: 2022. 1. 14).

28) UCDAVIS의 Lybbert가 작성한 USPC-ISIC Rev. 4 간 연계표(<https://are.ucdavis.edu/people/faculty/travis-lybbert/research/concordances-patents-and-trademarks/>, 검색일: 2022. 1. 2)를 이용하여 산업별 특허등록 현황을 정리함.

- 한미 FTA 발효 전 4년(2008~11년) 평균 특허등록 건수를 발효 후 4년(2012~15년) 평균과 비교한 결과, 한국에 의한 특허등록 건수는 전자, 정보통신, 기계 산업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상기 3개 산업 모두에서 한국에 의한 특허등록 증가율이 외국에 의한 특허등록 증가율보다 높음.
 - 외국에 의한 특허등록 건수 역시 전자, 정보통신, 기계 산업에서 FTA 발효 후 많이 증가
- 이외 자동차, 기타 수송기기, 도소매, 부동산,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다수의 산업에서 한국에 의한 특허등록 증가율은 100%를 초과함.

표 21. 미국 특허의 산업별 등록 추이

(단위: 건, %)

| 산업 | 외국에 의한 특허등록 | | | | 한국에 의한 특허등록 | | | |
|---------------|----------------|----------------|--------|------|----------------|----------------|-------|-------|
| | 2008~11년 평균 | 2012~15년 평균 | 증감건 | 증감률 | 2008~11년 평균 | 2012~15년 평균 | 증감건 | 증감률 |
| 농축수산물 | 2,887 | 4,013 | 1,126 | 39.0 | 182 | 234 | 52 | 28.6 |
| 광업 | 116 | 188 | 72 | 62.0 | 3 | 5 | 2 | 77.9 |
| 섬유직물의복기타 | 7,611 | 10,262 | 2,651 | 34.8 | 452 | 596 | 144 | 31.9 |
| 화학고무플라스틱 | 11,902 | 18,219 | 6,317 | 53.1 | 756 | 1,202 | 446 | 58.9 |
| 비금속광물제품 | 3,345 | 4,341 | 996 | 29.8 | 508 | 489 | -19 | -3.7 |
| 1차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 4,179 | 5,996 | 1,817 | 43.5 | 539 | 714 | 175 | 32.5 |
| 자동차 | 1,408 | 2,113 | 705 | 50.1 | 63 | 139 | 75 | 118.9 |
| 기타 수송기기 | 1,565 | 2,801 | 1,236 | 79.0 | 58 | 149 | 91 | 155.7 |
| 전자 | 29,607 | 43,107 | 13,500 | 45.6 | 3,320 | 4,911 | 1,591 | 47.9 |
| 기계 | 16,269 | 24,101 | 7,832 | 48.1 | 1,233 | 2,172 | 939 | 76.2 |
| 전기가스수도환경 | 1,969 | 3,042 | 1,073 | 54.5 | 129 | 211 | 82 | 63.9 |
| 건설업 | 5,636 | 8,091 | 2,455 | 43.6 | 1,303 | 1,638 | 335 | 25.7 |
| 도소매 | 250 | 344 | 95 | 37.8 | 8 | 16 | 9 | 109.4 |
| 정보통신 | 8,646 | 16,020 | 7,374 | 85.3 | 1,313 | 2,687 | 1,375 | 104.7 |
| 금융보험 | 341 | 434 | 93 | 27.3 | 14 | 22 | 9 | 64.6 |
| 부동산 | 1 | 2 | 1 | 38.4 | 0 | 0 | 0 | 121.0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948 | 1,490 | 542 | 57.2 | 81 | 163 | 82 | 101.2 |
| 기타 서비스 | 1,555 | 2,901 | 1,347 | 86.6 | 98 | 193 | 95 | 96.5 |
| 전 산업 | 98,236 | 147,466 | 49,231 | 50.1 | 10,061 | 15,544 | 5,483 | 54.5 |

주: 특허등록 연도 기준임.
자료: 미국 특허청 CD-ROM.

나. 제도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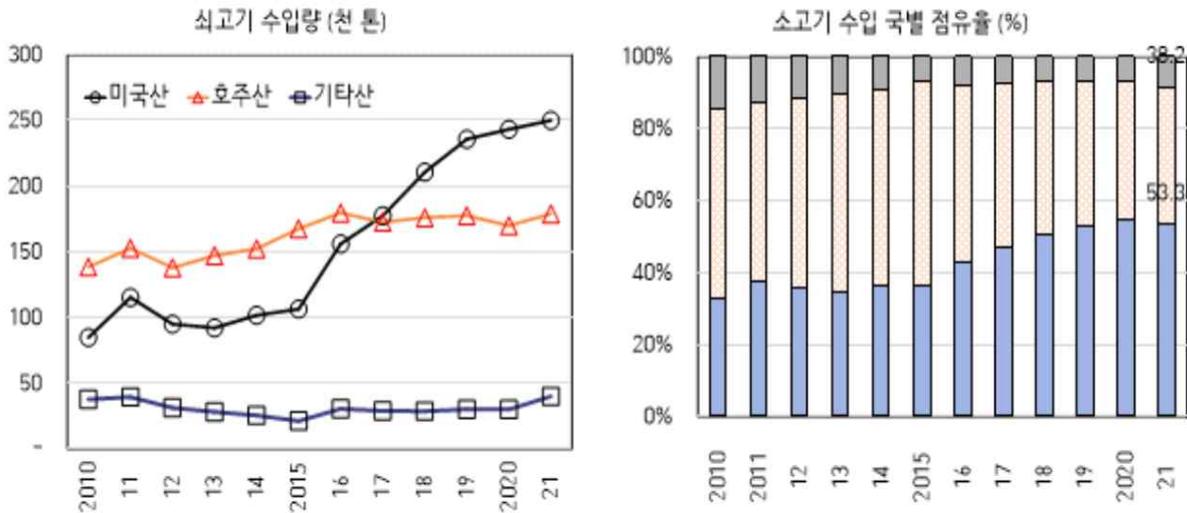
1) 주요 쟁점별 제도 변화 및 경과

가) 소고기

■ 한미 FTA 이행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한우 산업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농업계는 소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우 사육농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암소 도축에 나설 경우, 지난 2001년 소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나타난 한우 사육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인한 한우 소고기 가격인하 효과는 크지 않고, 호주산 소고기를 대체하여 실제 한우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²⁹⁾

그림 4. 그림 쇠고기 수입량과 국별 점유율 변화(2010~21년)



주: 여기서 소고기는 HS 0201 및 0202으로 제한.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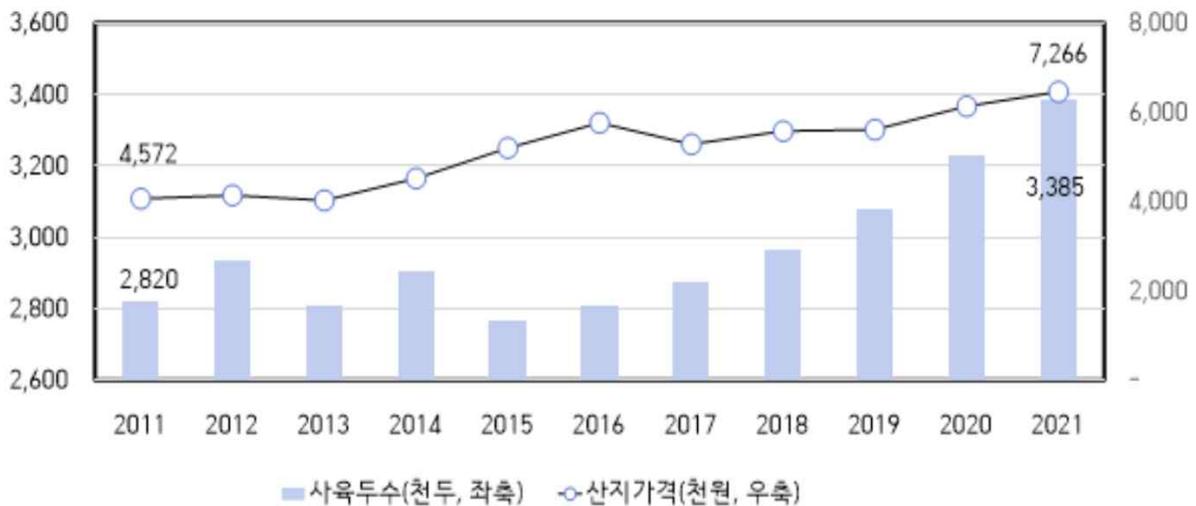
■ 한미 FTA 이행 결과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그와 동시에 한우 사육두수와 소고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여 당초 우려와 달리 한우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증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2011년 약 11만 5천 톤에서 2021년 약 25만 톤으로 지난 10년간 2.2배 증가하였으며, 금액면에서도 약 6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같은 기간에 3.5배 증가하였음.
 - 미국산을 제외한 소고기 수입량과 수입액이 같은 기간 각각 1.14배, 1.6배 증가한 점에 비추어 한미 FTA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29) 이정환, 서진교(2007), 「한미 FTA를 해부한다(1): 쇠고기와 오렌지」, 『시선집중』, 제35호, GS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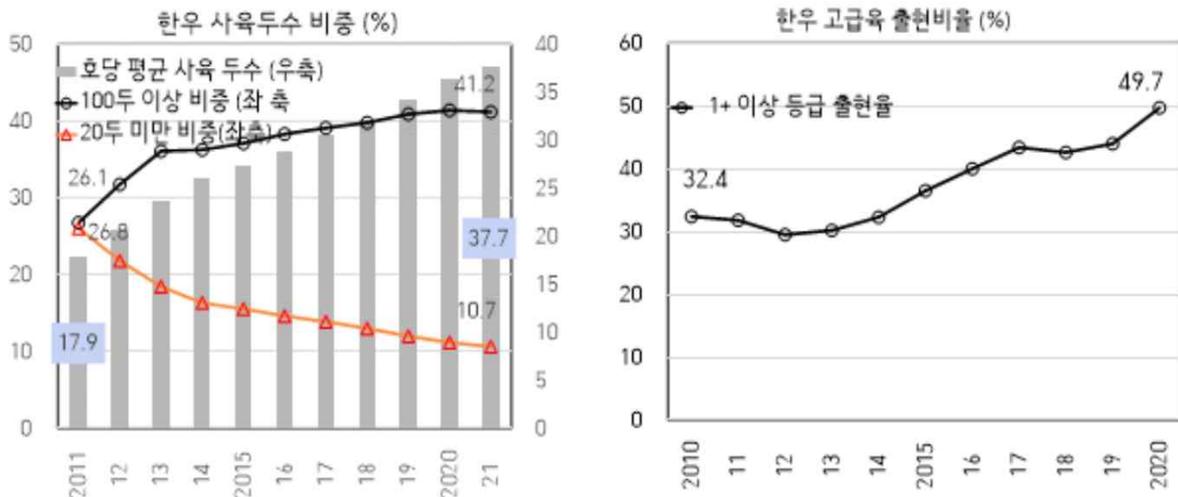
- [미국산 소고기가 호주산 소고기를 부분 대체] 전체 소고기 수입량에서 미국산과 호주산의 비중이 2011년 각각 32.5%, 53.0%에서 2021년에는 53.3%, 38.2%로 역전되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임.
 -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2004~06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이후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그 비중은 25% 내외에 불과하였음.
- [한우 사육두수 및 한우 가격의 상승세] 미국산 소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 사육두수는 초기 조정을 거친 후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한우 산지가격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해왔음.
 - 한우 사육두수는 2011년 282만 마리에서 2021년 340만 마리로 2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한우 산지 가격도 마리당(600kg) 466만 원에서 727만 원으로 약 60% 상승하였음.

그림 5. 한우 사육두수 및 한우 산지가격 변화(2011~21년)



자료: 통계청 가축통계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림 6. 한우 사육두수 비중과 고급육 출현비율의 변화(2010~21년)



자료: 통계청 가축통계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정보 각 연도.

■ 한우 산업에 대한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이는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부의 보완대책, 시장 차별화와 함께 한우 농가의 자체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임.

- [15년에 걸친 장기간의 관세철폐] 미국산 소고기 수입관세(40%)는 15년에 걸쳐 연간 약 2.7%씩 낮아져 관세인하에 따른 충격을 분산하고 경쟁력 제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다양한 경쟁력 제고대책] 한미 FTA 이행에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소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소고기이력추적제 등 다양한 보완대책으로 한우 생산성 제고는 물론 수입 소고기와의 차별이 가능했음.
- [한우 산업의 규모화]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11년 18마리에서 2021년 약 38마리로 증가함. 특히 100두 이상 사육농가의 비중이 2011년 26.8%에서 2021년 41.2%로 증가하였음.
- [한우의 고급화] 한우의 고급화도 급격히 진행되어 1+ 이상 고급육이 2011년 31.8%에서 2021년 49.7%로 증가, 한우 소고기의 주류로 정착하였음.

나) 의약품

■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인해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음.

- 특히 한미 FTA를 통해 후발의약품 업체는 특허권자에게 제네릭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특허소송 발생 시 소송 기간 동안 제네릭의 판매가 금지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됨.
-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국내 제약업체의 타격이 예상되었음.

■ 강화된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한 제네릭의 출시 지연 및 약품비 상승 등의 효과는 당초 우려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한 반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함.

- 판매금지가 도입된 2015년 3월부터³⁰⁾ 2020년 12월까지 통지의약품 2,361개 중 141개에 대해서만 판매금지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중 29건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판매금지가 승인됨.
- 첫 제네릭의 시장 진입 시기에 대해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제네릭의 시장진입 지연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고 시장점유율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밝힌 연구결과가 보고됨.³¹⁾
- 오히려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함께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³²⁾를 통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남.³³⁾

30) 판매금지에 관한 조항인 한미 FTA 제18.9.5조 (b)항의 시행은 한미 FTA 발효 이후 3년간 유예되었고, 2015년 3월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도입되었음.

31) 「202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2021), pp. 152~154.

32)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한미 FTA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증대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 특허에 도전한 첫 후발진입 기업에 주는 일종의 보상으로, 후발진입 기업의 특허소송 승소 시 9개월간 다른 후발진입 기업의 제네릭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임.

33) 앞의 책, pp. 152~154.

표 22. 주요국의 제약산업 R&D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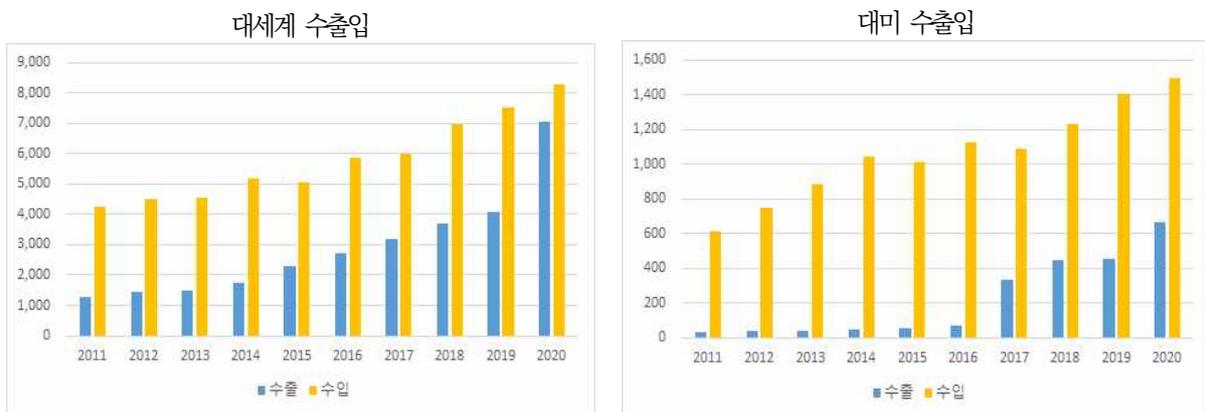
| 경제권 | 미국(백만 달러) | EU(백만 유로) | 한국(억 원) |
|------------|-----------|-----------|---------|
| 2011 | 48,645 | 29,192 | 9,230 |
| 2012 | 49,588 | 30,035 | 10,363 |
| 2013 | 51,614 | 30,442 | 9,786 |
| 2014 | 53,253 | 30,887 | 11,017 |
| 2015 | 59,642 | 31,500 | 12,618 |
| 2016 | 65,538 | 33,949 | 13,413 |
| 2017 | 71,399 | 35,318 | 13,221 |
| 2018 | 79,603 | 36,312 | 16,238 |
| 2019 | 82,956 | 37,754 | 18,057 |
| 연평균 증가율(%) | 6.9 | 3.3 | 8.8 |

자료: 「2021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총 R&D 규모는 2011년 9,230억 원에서 2019년 1조 8,057억 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과 EU보다 가파르게 상승함.

- 2012년 이후 양국간 의약품 무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2011년 대비 약 22배 증가함.
-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은 한미 FTA 이전인 2011년 3,091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6억 6,464만 달러로 연평균 40.6% 증가하며 전세계 의약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21.0%)을 상회함.

그림 7. 한국의 의약품 수출입 추이(2011~20년)



주: MTI 2262 기준.
자료: KITA 무역통계.

- 수입도 2011년 6억 1,379만 달러에서 2020년 14억 9,317만 달러로 연평균 10.4% 증가하며, 전세계 의약품 수입 연평균 증가율(7.8%)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냄.

다) 스크린쿼터

-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스크린쿼터 축소 또는 폐지 시 유치산업인 한국 영화산업이 쇠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이를 격렬하게 반대한 바 있음.
 - 1998~99년 한미투자협정(BIT) 협상 당시 미국 측은 스크린쿼터³⁴⁾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한미 BIT 협상은 중단되었으나 이러한 통상압력은 한미 FTA 협상으로 이어짐. 그러나 스크린쿼터의 축소나 폐지 시 한국 영화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으로 인해 영화계에서 격렬하게 반대함.
 - 영화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도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³⁵⁾ 톱스타들의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스크린쿼터 지키기 결의 대회 등 반대시위가 지속됨.
 - 2000년대 초 정부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40%가 되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2006년 1월 26일,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년의 2/5인 146일에서 그 절반인 73일로 줄인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후 영화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³⁶⁾
 - 한미 FTA에서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 제도와 관련하여 시장 접근과 이행요건 의무에 대해 현재 유보하여, 향후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음.
- 2007년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불황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영화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국내 영화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영화계 내부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이어지면서 스크린쿼터 축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정부는 2006년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대신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2011년 이후 10년 연속 한국영화가 국내 관객 점유율에서 외국영화를 앞섰으며 아울러 최근 ‘부산행’, ‘기생충’ 등의 한국 영화가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외국 유수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하는 등 한국 영화의 국제적 영향력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음.

34)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 또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스크린쿼터를 시행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브라질, 에스파냐, 파키스탄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1966년 국산영화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함.

35) 정미정(2006), 「스크린쿼터에 관한 뉴스보도 담론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 통권 35호, p. 149.

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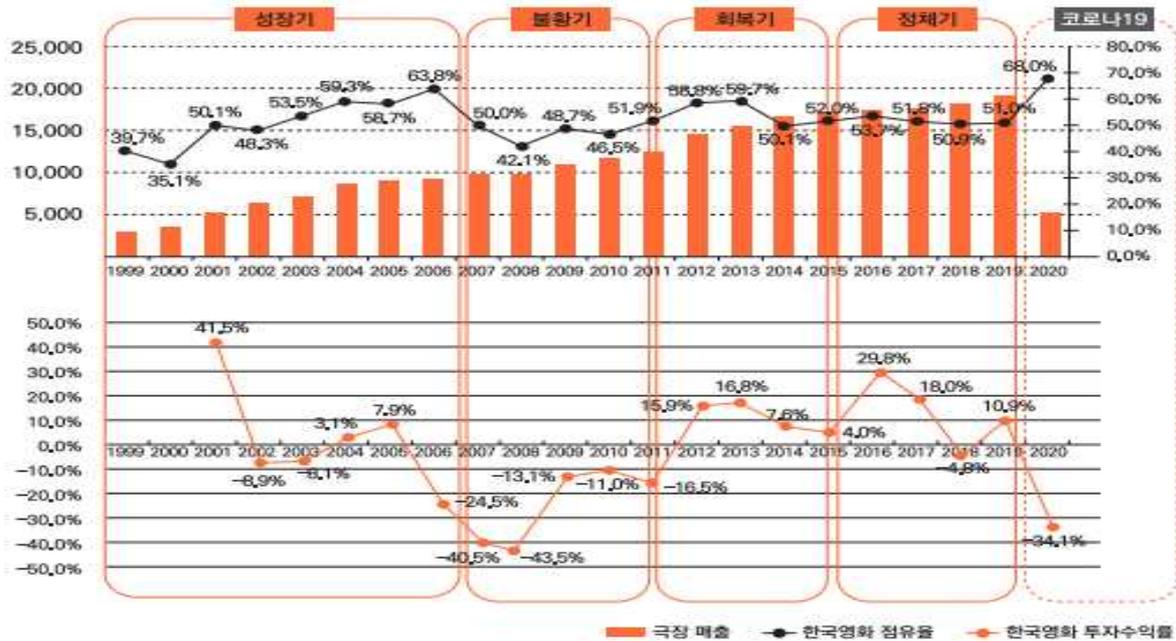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그림 8. 한국영화 점유율 및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만 명,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2021),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p. 6.

라) 자동차

■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조세, 환경기준, 안전기준 등과 관련하여 미국 측이 요구해오던 부분이 상당부분 수용되어 미국산 차량의 내수 판매 잠식 가능성이 높아짐.³⁷⁾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해 1만 대 이하의 소수차량 제작·판매사에 대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으며, 한미 FTA 협상에서 배기량 기준 조세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를 개편하여 대형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고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한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 도입 또는 기존 조세 수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
- 2010년 추가 협상을 통해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는 2만 5,000대 이상 판매되는 차량만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자동차 품목(HS코드 8703,8704)에 대해서만 최초 2년간 보복을 금지하는 최장 4년 가능하며, 발동횟수에 제한이 없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25%를 2041년 1월 1일에 철폐하기로 하고, 연간 제작사별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비/온실가스 차기기준(‘21~’25) 설정 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등에 합의함.

37) 이재일 외(2018. 3. 28), 「미국발 무역분쟁, 철강에서 시작하여 자동차로 확산」, 유진투자증권 Issue Report.

- 최근 10년('12 → '21년) 사이 미국산 차의 국내 수입뿐만 아니라 한국산 차의 대미국 수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양국에서 제조한 자동차가 상대국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높아졌음.

표 23. 주요 국가별(브랜드별) 한국시장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천 대, %)

| 국가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독 일 | 107 (66.0) | 138 (62.8) | 169 (59.4) | 140 (52.8) | 134 (50.9) | 155 (53.1) | 148 (54.0) | 187 (61.9) | 192 (62.1) |
| 미 국 | 12 (7.6) | 15 (6.9) | 24 (8.4) | 32 (12.2) | 26 (10.0) | 31 (10.7) | 33 (12.0) | 46 (15.2) | 49 (15.8) |
| 일 본 | 22 (13.8) | 24 (11.1) | 30 (10.5) | 36 (13.6) | 44 (16.7) | 46 (15.7) | 37 (13.6) | 21 (7.0) | 21 (6.8) |
| 기 타 | 20 (12.6) | 42 (19.2) | 62 (21.7) | 57 (21.4) | 59 (22.4) | 60 (20.5) | 56 (20.4) | 48 (15.9) | 48 (15.3) |
| 전체 수입차 | 162 | 219 | 284 | 265 | 264 | 293 | 275 | 303 | 310 |

주: 괄호 안은 전체 수입차에서 해당 국가 차의 비중.

자료: 한국자동차협회 보도자료(2021), 「'20년 한국 수입차시장, 독일 1위, 미국 2위로 판도 변화」, p. 2 자료 업데이트.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자동차(브랜드별)는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4만 9천 대 (비중 15.8%)를 판매하여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입차에서의 점유율도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섬.
- 최근 10년, 한일 양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산(원산지) 차 점유율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시장에서는 ('11) 0.8% → ('20) 3.5%로 4.4배 증가하며 미국산 차에 대한 시장 개방도가 높아진 반면, 일본시장에서는 ('11) 0.3% → ('20) 0.4%로 10년 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한국시장 및 일본시장에서 미국산 차 점유율

(단위: 천 대, %)

| 구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한국시장 전체 판매 | 1,586 | 1,532 | 1,544 | 1,662 | 1,834 | 1,823 | 1,830 | 1,827 | 1,795 | 1,906 |
| 미국산 차 (비중) | 13 (0.8) | 20 (1.3) | 25 (1.6) | 33 (2.0) | 48 (2.6) | 57 (3.1) | 55 (3.0) | 56 (3.1) | 60 (3.3) | 67 (3.5) |
| 일본시장 전체 판매 | 4,210 | 5,370 | 5,376 | 5,563 | 5,047 | 4,970 | 5,234 | 5,272 | 5,195 | 4,599 |
| 미국산 차 (비중) | 13 (0.3) | 19 (0.4) | 15 (0.3) | 20 (0.4) | 20 (0.4) | 19 (0.4) | 19 (0.4) | 19 (0.4) | 31 (0.6) | 21 (0.4) |

자료: 한국자동차협회 보도자료(2021), 「'20년 한국 수입차시장, 독일 1위, 미국 2위로 판도 변화」, p. 3, 원자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일본자동차공업회(JAMA), Wards(美).

- 한국산 차도 미국시장에서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과 품질 향상, 마케팅 노력 등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12년 → '21년) 판매대수 및 비중이 높아짐.
 - '21년 한국산(원산지) 대미국 수출 자동차 대수는 97만 대로 판매대수 및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한국계 브랜드(현대+기아)의 '21년 미국시장 판매비중은 10.0%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

표 25. 미국시장 내 한국산 차 및 한국계 브랜드 점유율

(단위 : 만 대, %)

| 구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미국시장 전체 판매 | 1,443 | 1,553 | 1,645 | 1,741 | 1,748 | 1,715 | 1,722 | 1,696 | 1,447 | 1,493 |
| 한국 원산지 대수 (비중) | 63 (4.4) | 66 (4.2) | 75 (4.6) | 91 (5.2) | 97 (5.6) | 86 (5.0) | 84 (4.9) | 85 (5.0) | 85 (5.8) | 97 (6.5) |
| 한국계 브랜드 대수 (비중) | 126 (8.7) | 126 (8.1) | 131 (7.9) | 139 (8.0) | 142 (8.1) | 128 (7.4) | 127 (7.4) | 133 (7.8) | 122 (8.5) | 149 (10.0) |

자료: 한국자동차협회 보도자료(2021), 「'20년 한국 수입차시장, 독일 1위, 미국 2위로 판도 변화」, p. 2 자료 업데이트, 원자료는 Wards(美) - Light vehicles.

■ 최근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되었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개정 협상을 통해 국내 법규가 완화돼 미국 차 업체들은 종전보다 2배 늘어난 5만 대까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개정되어 한국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었으며, 반대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화물용 트럭의 관세 철폐는 미뤄졌음.
- 그러나 포드, 크라이슬러의 한국 내 판매량은 한 해 1만 대 미만에 그쳐 국내 안전기준 충족 허용 쿼터를 높인 것의 실효적 영향이 없으며, 화물용 트럭의 경우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픽업트럭이 없고,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관세철폐 유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종합하면 한미 FTA 이후 양국 모두 상대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대수 및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로 '원인'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됨.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1.3)를 통해 한국 내 미국차 판매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³⁸⁾ 미국시장 내에서도 한국 차의 판매 대수 및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비중에 있어서는 한국시장 미국산 자동차 판매의 비중 증가가 더 뚜렷하지만, 판매대수 측면에서는 미국시장 내에서의 한국산 자동차 판매대수의 증가분('13)66만 대→('21)97만 대)이 한국시장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대수 증가분('13)1만 2천 대→('21)4만 9천 대)을 크게 상회함.

마) ISDS

■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는 한미 FTA에서 도입하려 할 당시 국내에서 많은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로서 그 당시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도 이미 포함된 제도였음.

※ ISDS: 국제투자협정에 위반되는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외국인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하여 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

38) NT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2012년 6억 1,700만 달러에서 2020년 25억 달러로 309% 증가함. USTR(2021),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3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NTE.pdf>.

- UNCTAD의 조사에 따르면,³⁹⁾ 2,574건의 국제투자협정(FTA와 BIT 포함) 중 약 94.8%에 해당하는 2,440건에서 ISDS에 관한 규정이 발견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임.
- 2007년 서명된 한미 FTA보다 앞서 서명된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는 물론, 한중 BIT(1992년 협정, 2007년 서명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한일 BIT(2002년 서명) 등에도 ISDS가 포함되어 있음.
※ 한-EFTA FTA의 경우, EFTA 4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ISDS가 적용되지 않음.

■ 외국인투자자의 잦은 중재 제기 가능성(남소) 등의 이유로 ISDS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반대 측 주장이 있었으나,⁴⁰⁾ 지금까지 한미 FTA를 근거로 제기된 사건의 수는 남소에 해당할 정도는 아님.

-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10건 중 절반 이하인 4건이 한미 FTA를 근거로 제기된 사건이며,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미국인 투자의 순위와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고 볼 수 없음.

표 26.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 사건명 | 근거협정 | 신청일 | 조치(신청인 주장) | 진행상황 | |
|-----|-------------------|------------|-------------|---------------------|-----------------------------------|
| 1 | 론스타(LSF-KEB) | 한벨기에 BIT | 2012.11.21. | 매각승인지연, 과세 | 계속 중 |
| 2 | 하노칼(Hanocal) | 한네덜란드 BIT | 2015.4.30. | 주식매각과세 | 종료(중재신청 철회) |
| 3 | 다야니(Dayyani) I | 한이란 BIT | 2015.9.14. | 계약금 몰취 | 패소(중재판정:2018.6. 판정취소 기각: 2019.12) |
| 4 | 엘리엇(Elliott) | 한미 FTA | 2018.7.12. | 기업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 계속 중 |
| 5 | 서OO(Seo v. Korea) | 한미 FTA | 2018.7.12 | 부동산 수용 | 우리나라 승소(2019.9.27) |
| 6 | 메이슨(Mason) | 한미 FTA | 2018.9.13. | 기업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 계속 중 |
| 7 | 신들러(Schindler) | 한EFTA 부속협정 | 2018.10.11. | 금융당국이 회사의 부당유상증자 방치 | 계속 중 |
| 8 | 민OO(Min v. Korea) | 한중 BIT | 2020.7.18. | 담보권 실행 및 이에 따른 재판절차 | 계속 중 |
| 9 | 원O(Won v. Korea) | 한미 FTA | 2021.5.6. | 부동산 수용 | 계속 중 |
| 10 | 다야니(Dayyani) II | 한이란 BIT | 2021.10.18. | 다야니 I 중재판정 미이행 | 계속 중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8. 20), 「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의 첨부파일 '200820 대국민 브리핑 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4499>(검색일: 2022. 2. 9); 법무부 보도자료(2021.10. 28),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 접수」,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zMTk1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O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1M0QIMjZpc1ZpZXNa>(검색일: 2022. 2. 9) 등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39)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홈페이지, "Mapping of IIA Content,"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iaa-mapping>(검색일: 2022. 3. 3).

40) 이해영, 진시원(2007), 「한미FTA 투자협정 평가 -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편저,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p. 283.

- 한미 FTA에 근거한 4건 중, 2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다른 2건은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수용과 각각 관련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음.⁴¹⁾
- 한편 부동산 수용 관련 서OO 대 대한민국 사건(Seo v. Korea)에서는 우리나라가 승소했는데, 중재 신청인이 주장한 투자가 한미 FTA가 규정한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에 기각판결을 받은 것일 뿐, 우리나라의 수용제도 또는 관련 집행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은 아님.
- 부동산 수용 관련 또 다른 사건인 월O 대 대한민국 사건(Won v. Korea)은 중재신청서가 접수되었음.
-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한다면, 장래에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제도의 합리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투자자가 외국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ISDS 사건 7건 중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중재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사건은 아직 없지만, 중재의사를 밝힌 사건은 1건 있었음.

※ 중재의사의 통지(notice of intent):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지로서, 중재절차가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아님.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중재의사를 서면 통보할 것이 요구됨(제11.6조 2항).

표 27. 우리 투자자가 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 | 사건명 | 근거협정 | 신청연도 | 진행상황 |
|---|--|---------------------|------|---------------------------|
| 1 | 신한엔지니어링(Shinhan v. Libya) | 한리비아 BIT | 2013 | 계속 중 |
| 2 | 백OO(Beck v. Kyrgyzstan) | CIS 투자자 권리 협약(1997) | 2013 | 계속 중 |
| 3 | 안성주택(Ansung Housing v. China) | 한중 BIT | 2014 | 투자자 패소 (중재 제기기간 초과) |
| 4 | 삼성중공업 대 오만(Samsung v. Oman) | 한오만 BIT | 2015 | 합의종결(판정문 미공개) |
| 5 | 삼성중공업 대 사우디아라비아 (Samsung v. Saudi Arabia) | 한사우디 BIT | 2017 | 종결 (2021.12.3 판정문 미공개) |
| 6 | 신O백(Baig v. Viet Nam) | 한베트남 BIT | 2018 | 계속 중 |
| 7 | 한국서부발전 v. 인도(Kowepo v. India) | 한인도 BIT 한인도 CEPA | 2018 | 계속 중 |

주: 공개되지 않은 ISDS 사건이 더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8. 20), 「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의 첨부파일 “200820 대국민 브리핑 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4499>(검색일: 2022. 2. 9);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검색일: 2022. 2. 9) 등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41) 류영욱(2021. 12. 21), 「국정농단 판결, 엘리엇 소송 고려해달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307290/> (검색일: 2022. 2. 15).

- 2019년 10월 31일 중재의사의 통지(중재의향서 통보)를 한 케이티보 사건에서,⁴²⁾ 케이티보 측은 미국정부가 케이티보 대표이사를 사기 및 밀수죄로 고발하고 케이티보의 자산을 몰수한 조치가 한미 FTA 제11.6조(수용)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2020년 초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3자 자금제공(이른바 ‘제3자 펀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⁴³⁾
- ※ 제3자 자금제공(TPF: Third-party funding): 제3자가 분쟁당사자에게 중재절차를 위한 자금을 제공한 후, 자금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승소하여 피신청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자금제공의 대가를 지급

2) 기타 주요 국내제도 개선사항

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법률 개정

- 한미 FTA 체결의 취지 중 하나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실제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국내법률이 개정되었고 국내제도 개선에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⁴⁴⁾

표 28.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된 법률의 유형별 분류

| | 유형 | 법률 명칭 |
|----|----------------------------|---------------------------------|
| 1 | 한미 규제조화 (4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2 | | 「전파법」 |
| 3 | | 「대외무역법」 |
| 4 | |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 5 | 제도 간소화 (3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6 | | 「개별 소비세법」 |
| 7 | | 「지방세법」 |
| 8 |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3건) | 「우편법」 |
| 9 |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 10 | | 「보험업법」 |
| 11 |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 「공인회계사법」 |
| 12 | | 「세무사법」 |
| 13 | | 「외국법자문사법」 |
| 14 | | 「전기통신사업법」 |
| 15 | | 「방송법」 |

42) U.S. Department of State(2019), “KTurbo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ww.state.gov/kturbo-inc-v-united-states-of-america/>(검색일: 2022. 2. 9).

43) 김지환(2020. 1. 13), 「한국터보기계 “미 정부, 1000만달러 몰아내라”…ISDS 예고」,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001132346001>(검색일: 2022. 2. 10).

44) 법령의 개정은 통상협정의 체결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내외의 법률적 수요에 따라 변화하며, 한미 FTA에 따른 국내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 중 상당수는 이미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어 제도 도입에 이르지 못했던 것들도 있음.

| | 유형 | 법률 명칭 |
|----|----------------------|----------------------------|
| 16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 「저작권법」 |
| 17 | | 「약사법」 |
| 18 | | 「디자인보호법」 |
| 19 | | 「특허법」 |
| 20 | | 「상표법」 |
| 21 | | 「실용신안법」 |
| 22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23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24 | | 「관세법」 |
| 25 | 투명성 제고(1건) | 「행정절차법」 |

주: 위 목록은 예시적인 것이며, 이행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망라하여 정리한 것이 아님.

자료: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2014),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14-05, p. 18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은 크게 ① 한미 규제조화 ② 제도 간소화 ③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④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 ⑤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⑥ 투명성 제고라는 여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나) 주요 사례

■ [공정거래법] 국내도입 논의가 답보상태이던 동의를결제⁴⁵⁾가 한미 FTA를 계기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 FTA 추진이 발표(2006.2.3)되기 전인 2005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06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및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부정적 여론과 다른 부처의 반대로 무산됨.⁴⁶⁾
- 한미 FTA 협정은 동의를결제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부당공동행위를 동의를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이 개정 및 시행됨(2011.12.2).⁴⁷⁾
- 네이버(주) 사건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사건에서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진 것을 시작(2014.5.8)으로, 2022년 1월 말 현재까지 총 10건에서 동의(인용)의결이 내려지는 등 동의를결제도가 활용되고 있음.⁴⁸⁾
-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 최종보고서』에서 동의를결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활용이 미흡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함.⁴⁹⁾
-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업종(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를결제도 개선이 의료기기(2순위)를 제외한 5개 업종에서 1순위 희망사항으로 조사됨.⁵⁰⁾

45) 동의를결제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결을 하면 심의절차를 중단하는 제도임. 미국의 동의명령 또는 동의판결, EU의 화해결정, 독일의 의무부담부 확약처분, 일본 동의심결제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임(강정희(2012), 「한·미 FTA상 경쟁관련 분야 및 동의를결제」, 『법과기업연구』, 제2권 제1호(6월), pp. 254~257).

46) 위의 자료, pp. 251~252.

47) 위의 자료.

48)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7).

49)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8. 7. 27),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 p. 11(검색일: 2021. 2. 7).

■ [우체국예금보험법] 우체국 보험도 민간 보험과 동일하게 금융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함.

- 우리나라 「우정사업법」은 우정사업에 우체국 보험을 포함하고 있는바, 한미 FTA는 민간 공급자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와 동종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에 경쟁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⁵¹⁾ 우리나라는 우체국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거나 또는 결산할 경우 관련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우체국예금보험법」을 개정하여 발효함(2012.3.15).⁵²⁾
- 우체국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한미 FTA를 통해 국내 제도의 투명성과 규제 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⁵³⁾ CPTPP에는 우리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관련 시장에서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 지정된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규범도 있기 때문에,⁵⁴⁾ 한미 FTA를 계기로 우체국 보험제도를 개선한 것은 CPTPP 가입 준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외국법자문사법]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되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이전 외국법자문사의 외국법 및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허용(1단계), 발효 후 2년 이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법과 외국법의 혼재사무 처리 허용(2단계), 발효 5년 내 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한 한국 변호사 고용 허용(3단계)을 규정함.⁵⁵⁾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이전인 2009년에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한 후, 2011년과 2016년에 차례로 개정하여, 3단계 개방까지 모두 완료했음.⁵⁶⁾
-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사내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에서 선택의 폭 확대를 체감하지 못하며, 국내 로펌의 전문성 촉진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고,⁵⁷⁾ 3단계 개방 후 5년이 지났지만 설립된 합작법무법인은 없음.
- 2, 3단계 개방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의 개방은 장기과제로 두되 단기적으로 1단계 개방 수준의 활동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⁵⁸⁾

■ [상표법]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소리 상표가 등록되었음.

- 한미 FTA는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⁵⁹⁾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에 소리 또는 냄새도 포함되는 것으로 「상표법」을 개정하여 발효(2012.3.15)시켰음.⁶⁰⁾
- 소리 상표 도입을 제안한 연구용역이 2006년에 있었으나,⁶¹⁾ 약 5년이 지나 한미 FTA를 계기로 도입되었음.

50) 공정거래위원회(2022), 「2021년판 공정거래백서」, p. 528.

51) 한미 FTA 제13장(금융서비스)의 구체적 약속 제6절(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및 부속서 13-다(금융서비스위원회).

52) 「우체국예금보험법」(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5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3항 내지 제6항.

53) 관계부처 합동(2022. 1. 25),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p. 8.

54) CPTPP 협정문 제17장(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55) 한미 FTA 부속서2의 '법률서비스-외국법자문사' 분야 유보내용 제2항.

56) 한미 FTA의 시한보다 훨씬 앞서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각각 한-EU FTA, 한-아세안 FTA에 따른 시한이 먼저 도래했기 때문임.

57) 심정희, 박지영, 백상준, 이재일(2017. 12. 29),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 및 후속대책연구」, p. 86, 국회입법조사처.

58) 강한(2021. 12. 2),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 『법률신문』.

59) 한미 FTA 제18.2조(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제1항.

60) 「상표법」(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3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다목.

- “이 소리도 아닙니다”라는 소리 상표를 한 제약회사가 출원하여 등록(2018.11.5)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97건의 소리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냄새상표는 민트향이 출원되었으나 현재 등록된 것은 없음.⁶²⁾

4. 맺음말

가. 주요 성과 및 시사점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한미 FTA는 구성요소의 포괄 범위나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 특히 선진국과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음.
-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국내 제도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음.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발전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고기술 중간재 무역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미국으로부터 양질의 사업서비스 수입이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양국간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가 고도화됨.
-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상대국 내 생산된 부가가치를 사용하는 비중이 FTA 발효 이전(2011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상승함(2019년 기준).
-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특허 등록건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함.
 - 미국은 지난 10년간 세계 혁신을 주도해온 시장으로, 대미 투자와 국내 기업 혁신 간의 긍정적 상호연관성 암시
- 한미 FTA라는 토대 위에서 지난 10년간(2011~20년) 한국과 미국은 각각 2.4%와 1.7%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OECD 국가 중에서 각각 3위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임.⁶³⁾

61) 김원오(2006), 「비전형적 상표의 효과적인 보호 및 운영방안 연구」(특허청 용역보고서), p. 118.

62)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검색일: 2022. 2. 8).

63)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검색일: 2022. 3. 11).

■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었던 분야에서는 보완대책 수립과 함께 해당 분야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당초 예상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남.

-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를 장기(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국내 충격을 완화하고, 국산 및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이력제를 실시하여 국산 한우 품질 차별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호당 사육 규모를 늘리고 한우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한우 농가의 자체 노력이 결합되면서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 사육두수 및 산지가격이 꾸준히 증가해옴.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제네릭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체의 타격이 예상되었지만 상기 제도로 인한 국내 제약업체의 판매금지 승인건수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제도 성격으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로 인해 더 많은 제약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R&D가 증가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스크린쿼터] 정부는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향후 5년간 4,000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마련하여 국내 영화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이후 한국 영화산업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의 불황기를 이겨내고 40% 이상의 국내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동력을 제공하였음.
- [자동차] 추가 및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정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FTA 이후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됨.

■ 다만 한미 FTA로 인한 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피해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 개방의 이익을 보다 폭넓은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한미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확대된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근로자의 경우 더 큰 이윤 혹은 소득 증가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의 경우,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오히려 수입경쟁이 더 심화된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을 확률이 높음.
 -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3~18년 기간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국내 기업의 고용과 일인당 실질급여액이 평균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더 높은 산업의 경우 국내기업 고용의 상대적인 감소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인당 실질급여액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음.⁶⁴⁾
 - 상기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확장하여 한미 FTA만의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된 결과, 한미 FTA 수출증가 효과는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 전반의 일인당 실질급여액을 증가시킨 가운데, 주로 미국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며, 반면 한미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는 해당 산업의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일인당 실질급여액의 증가율을 평균적으로 더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⁶⁵⁾

64) 구경현 외(2020),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03.

65) Koo (2022), 「The Impact of the KORUS FTA on Korea's Trade and Labor Market」, Working Paper

- 비수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고령일 경우 시장 개방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장치 및 지원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비수출 기업일수록 FTA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가 낮게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FTA로 인한 혁신효과가 낮게 나타남.⁶⁶⁾
 - 국내 수입경쟁 심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특히 저학력일수록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을 보였으며, 고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안정성을 보임.⁶⁷⁾
 - 무역 충격에 대한 선제적 안전망 마련 및 효과적인 노동시장 재조정 촉진이라는 맥락에서 기존의 무역 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미래 한미 협력 과제

■ [한미 간 미래 협력 의제]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무역 및 투자를 비롯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디지털,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미래 협력 의제에 대해 양국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 미국의 전체 수출 중 상대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사용 비중이 발효 전 대비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진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증가하는 등 한미 간 경제관계가 크게 발전하였음.
- 한미 양국은 이를 토대로 디지털,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미래 협력 의제에 대해 FTA 활용을 포함해 양국간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방안으로는 FTA 디지털 무역 챕터를 최신화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일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촉진될 필요가 있음.
- 노동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양국간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이 요구됨.
- 한미 간 환경 분야 협력방안으로는 양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분야 협력] 한미 FTA 디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 및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함.

-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강화된 형태의 디지털 무역규범을 협정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 FTA의 디지털 챕터는 그와 같은 규범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소비자 보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보장,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 조항 등에서 TPP 및 USMCA와 한미 FTA 간 차이가 발견됨.

66) 구경현 외(2020), 앞의 책.

67) 구경현·김혁황(2020),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 * 예컨대 소비자 보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보장은 TPP와 USMCA의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이들 항목이 노력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며, USMCA가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조항은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현재 진행되는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각국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최소한의 디지털 무역규범 수준을 기초로 한미 FTA 디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 방안에 대해 양국간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미 FTA 협정은 통신 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인 APEC-TEL MRA⁶⁸⁾ 2단계 이행을 위해 양국이 조속히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진행이 미진한 상황임.
 - 한미 양국은 FTA가 체결되기 전인 지난 2005년 5월, 서신 교환을 통해 APEC-TEL MRA 1단계를 발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한국의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국산 통신기기의 대미 수출이 용이해졌음.⁶⁹⁾
 - 또한 미국이 2016년 7월 13일부로 무선기기와 같은 인증제품에 대해 자국과 MRA를 체결한 국가의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같이 미국과 MR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보다 교역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음.⁷⁰⁾
 - 하지만 양국간 통신 분야 상호인정협정 범위가 여전히 MRA 1단계(한국에서 시험 실시 후 수출대상국인 미국에서 인증 절차 진행)에 그치고 있어, 해당 분야 제품의 대미 수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를 비롯한 적합성 평가 전 단계를 한국에서 완료하는 MRA 2단계를 체결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가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에 캐나다와 MRA 2단계를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간 협의 절차 및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동 분야 협력] 공급망 대응 관점에서 한미 FTA 노동 챕터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협력 메커니즘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함.**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한미 간 노동 분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이슈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점에서 한미 FTA 협정문 제19장(노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협력 메커니즘 이행 및 활용을 위한 양국간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함.
 -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근거로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 분야 관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교류, 세미나·워크숍 개최, 공동연구 실시 등 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⁷¹⁾
 - *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과의 FTA 기체결국은 물론 협상 대상국에 대해 노동 분야에서의 강화된 규범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 노동협력 메커니즘 이행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

68) APEC-TEL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APEC 회원국간 휴대전화, 모뎀 등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으로서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I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 II로 이뤄져 있음(관계부처 합동(2012. 6), 「한·미 FTA 주요 내용」, p. 72).

69) 국립전파연구원(2016. 1), 「전파연구 50년사 1966-2016」, p. 196.

70) *Ibid.*

71) 관계부처 합동(2012. 6), 「한·미 FTA 주요 내용」, p. 173.

- * 이러한 맥락에서 타이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간 제1차 노동협의회가 개최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제2차 노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한국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한 바 있음.⁷²⁾
- 양국간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이행하기 위해 발굴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사업이나 모니터링 협력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 팬데믹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산업 및 기업의 공급망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공급망 단계에서 발생하는 노동 이슈 및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 양국 기업이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 및 기업과의 연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국제 노동기준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음.
- * 양국 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 지역인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할권 행사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국이 지역을 배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협력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예: 중남미 지역은 미국, 동남아 지역은 한국, 중국은 양국 공동으로 모니터링 실시).

■ [환경 분야 협력] 양국의 2050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협력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기조를 공식화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된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이 양원 의회를 통과하였거나 계류 중인 상황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였고, 2050년 까지 국가적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하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미국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8월과 11월에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전력 인프라 개선 부문에 6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상원에서 계류되고 있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은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각종 기후변화 대응 보조금 지급에 5,5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한국정부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분야(△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별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마련됨.⁷³⁾
- 상기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할 때, 특히 양국의 공통적인 정책 중 하나로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양국이 관심을 갖는 3가지 저탄소 기술 분야(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IC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제거) 기술 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 **KIEP**

72) 「한미, FTA 노동 장(章) 기반 양자간 협력사업 추진 협의」(2021. 11. 19), 『연합뉴스』.

7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7. 14), 「2050 탄소중립 주춧돌 ‘그린뉴딜’…추진 1년 살펴보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093>(검색일: 2022. 3. 8).